

# 우리사주제도 실무 매뉴얼

2005. 11.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지원센터



## ▷ 일러두기 ◁

1. 이 매뉴얼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상의 우리사주업무를 업무별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여 본문 8편과 부록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본문의 각 편을 다시 세목별로 장·절·관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록에는 관련 법률, 유권해석 및 업무 관련 제서식을 실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조합 실무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조합업무를 그 처리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고,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표시는 약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관련부문 인용 및 약어 사용의 예】

- ① 4-2-1-2 참조 → 제4편 제2장 제1절 제2관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
  - ② 법, 영, 시행규칙 →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의미함
  - ③ 법§31 ①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 제1항을 의미함
  - ④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
3. 이 매뉴얼은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을 토대로 당사가 조합운영 실무사례를 수집·검토·정형화하여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내용상의 오류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업무 수행 시 각 사안별로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이 매뉴얼의 내용이 수정·보완되는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는 수시로 수정·보완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매뉴얼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본 매뉴얼의 내용을 재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6. 이 매뉴얼의 부족한 면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제도의 변경시마다 신속하게 수정·보강하여 그 내용을 「매뉴얼 Update」 코너에 게시하겠습니다.



## 서 문

우리사주제도는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50%이상의 지분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근로자 포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회사주식소유제도'를 말하며 여기서 '우리'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처음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목적으로 미국의 켈소(Louis Kelso)가 차입이 가능한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를 개발·시행한 이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을 공히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가 그 기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후반부터로 주로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근로자가 자기계산으로 우선 배정주식을 취득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우리사주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사주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에 이르렀고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우리사주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새로이 제정·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독립된 장을 두어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틀을 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방법의 다양화 및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0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대폭 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1977년 이래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수탁기관으로서 우리사주제도의 보급과 그 운영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5년 5월 우리사주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자, 기업, 주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매뉴얼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운영하는 회사 및 조합 실무자 여러분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2002년 9월 제정되어 관련 법률 개정시마다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공지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의 우리사주제도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됨에 따라 매뉴얼을 대폭 수정하여 “전면 수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의 미흡한 부분들은 수시로 수정, 보완될 예정이오니 당사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www.ceso.or.kr](http://www.ceso.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여러분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이해와 우리사주조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05. 11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우리사주지원센터장

# 목 차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1
제1장 우리사주제도란?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특징 및 기본 요건 .....	2
제3절 목적 및 효과 .....	3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3
2.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4
제2장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	6
제1절 발전 과정 .....	6
제2절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내용 .....	11
1. 기본 운영 구조 .....	11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12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15
4.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	16
5.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17
6. 자사주의 배정 .....	19
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	19
8. 자사주의 환매수 .....	21
9.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처리 .....	21
10. 주요 세제 지원 내용 .....	23
11. 금융 지원 .....	25
12. 벌칙 규정 .....	26

제2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7
제1장	설립 절차	29
제2장	조합규약등 제서식 작성 요령	36
제1절	설립준비위원회 동의서	36
제2절	조합 규약(안)	36
제3절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51
제3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57
제1장	조합원	59
제2장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60
제3장	조합의 임원 및 우리사주운영위원회	64
제4장	의결권 행사 방법	67
제5장	조합 회계 관리	73
제6장	보고·신고 사항	74
제7장	조합의 해산	76
제8장	법령상의 벌칙	78
제9장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항	79
제4편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관리	81
제1장	주식의 취득·배정·배분 방법	83
제1절	주식의 취득 방법	83
제2절	주식의 배정 방법	87
제3절	주식의 배분 방법	90
제4절	주식 취득 한도	94

<b>제2장 주식의 취득 유형별 배정·배분 등 실무 절차</b> .....	97
제1절 자사주 직접 취득 .....	97
제1관 기업·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	97
제2관 무상증자 등 권리에 따른 취득 .....	100
제2절 자사주의 간접 취득(조합기금에 의한 취득) .....	102
제1관 조합원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102
제1관의2 우선배정 주식의 취득 .....	106
제1관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취득 .....	111
제2관 회사·주주 등의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118
제3관 조합원 출연과 회사의 대응출연에 의한 취득 .....	121
제4관 조합 차입금에 의한 매입 .....	122
<b>제3장 신주인수권 및 배당금 처리</b> .....	126
제1절 유상증자의 처리 .....	126
제1관 조합원계정 보유주식의 유상증자 처리 .....	126
제2관 조합계정 보유주식의 유상증자 처리 .....	129
제2절 조합수익금(배당금 및 기금이자)의 처리 .....	130
<b>제4장 퇴직자등의 주식 처리</b> .....	131
제1절 퇴직자의 주식 처리 .....	131
제2절 자격상실(탈퇴) 조합원의 주식 처리 .....	134
<b>제5장 주식의 예탁 및 반환 절차</b> .....	136
제1절 주식 예탁 .....	136
제1관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	139
제2관 계정간 이체 예탁 .....	142
제3관 조합계정 예탁 .....	144

제4관 예탁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해지 절차 .....	146
제2절 주식 인출 .....	149
제3절 예탁 및 반환 관련 제신고 .....	153
제6장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자사주 환매수 절차 .....	155
제7장 조합원 인출 주식의 우선매입 절차 .....	157
제5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관리 .....	159
제1장 조합기금의 조성 .....	161
제2장 조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 .....	164
제6편 한국증권금융의 대출제도 .....	169
제1장 대출 조건 .....	171
제2장 조합원의 유상증자시 취득 자금 대출 .....	173
제3장 시장 매입시 취득 자금 대출 .....	175
제7편 우리사주관련 세제 .....	179
제1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 .....	181
제2장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	190
제3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	191
제4장 대주주등의 조합 출연금 소득 공제 .....	191
제5장 증권거래세 .....	192

제8편 질의응답(Q&A) .....	195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197
제2장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201
제3장 우리사주조합 기금 .....	203
제4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204
제5장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	207
제6장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	208
제7장 의결권등 권리 처리 .....	211
제8장 기타 사항 .....	213

부    록 .....	215
--------------	-----

I. 관련법규 .....	217
---------------	-----

1. 근로자복지기본법(전문) .....	217
2. 증권거래법(발취) 및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	273
3. 기타 관련 법령(민법, 세법 등 발취) .....	288

II.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 유권 해석 .....	320
------------------------------	-----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 .....	320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323
3. 조합의 기금 .....	329
4. 자사주의 배정 .....	329
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등 .....	333
6.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338

7. 조합의 해산 등 .....	340
8. 우리사주 세제 .....	341
<b>Ⅲ. 업무 서식 .....</b>	<b>351</b>
1. 행정 서식(노동부 신고 및 보고 서식) .....	351
2. 조합 업무 관련 서식(한국증권금융(주)) .....	362
가. 우리사주조합 표준규약 .....	362
나. 우리사주관리위탁 계약서 및 조합설립 관련 제서식 .....	371
다. 주식 예탁·반환 관련 서식 등 기타 제서식 .....	384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 제1장 우리사주제도란 ?

### 제2장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제1장 우리사주제도란?

#### 제1절 의 의

우리사주제도는 ‘우리회사주식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의 우리나라식 표현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란 근로자 또는 넓은 의미의 종업원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제도는 처음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최대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의 활동이 점차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 최근에는 기업 금융 수단, 생산성 향상 수단, 노사 갈등 해소 수단, 재산 형성 수단, 기업 구조 조정 수단,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애사심 및 충성심 유발 수단, 근로자의 경영 참가 수단, 근로자의 유치 및 보존 수단, 근로자의 기업 인수 및 승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본가에 비해 재산 축적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본 참가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사주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가 하면, 기업 출연 또는 외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도 하고, 정부가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근로자가 외부의 금융 지원을 받아 직접 취득하기도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든 그리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우리사주제도는 부의 공평 분배와 자본 소유의 분산 등을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특징 및 기본 요건

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당해 회사가 50%이상의 지분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근로자 포함)이어야 하고, 취득 대상은 자사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 또는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회사와의 협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경우도 종업원소유이기는 하지만 국가정책적 공적 제도인 우리사주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를 장기적·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자사주의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자사주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본 소유를 공유하여 기업 성장 과실의 배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사회·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사주의 취득·보유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도화에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구를 만들어 계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주식옵션제도와 같이 일회성,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방법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사주제도는 상설적인 기구에 의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전자의 경우를 말한다.

### 제3절 목적 및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주의와 자본 대중화의 달성을 그 이론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이 소수에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소수 자본가가 다수의 근로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진전되기 쉽다. 또한,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노사간의 대립은 더욱 광범위하고 첨예화되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발전되기도 하였다. The Ownership Solution의 저자인 Jeffrey R. Gates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사주제도야말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유 구조 개편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다시 말해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본 참가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신산업 협력 관계를 도출해내는데 그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이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과 효과를 갖고 있다.

####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에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임금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누리는 한편, 기업 발전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어 우리사주제도를 재산 형성 또는 장기 저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나. 근로자 경영 참여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종 의사 표시를 하며, 장부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체크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 다. 노사 협력 제고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며,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수평적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 라. 기업 생산성 향상

근로자가 자기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제도의 효과

### 가. 근로자 측면

첫째,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등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공유함으로써 임금소득을 보완하는 자본소득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급여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현재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급부를 수령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인력 감축 이외에 임금 조정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인출시 저율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분사, 공기업 민영화,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보존에 기여한다.

### 나. 회사 측면

첫째, 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애사심 고취 등 기업 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금전 대신 자사주 지급),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기업 자금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넷째, 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하고, 기업 분사 및 공기업 민영화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섯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에 대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근로자에게 원만하게 승계시킬 수 있다.

#### 다. 주주측면

첫째,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시장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제2장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 제1절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종업원 주식소유는 1958년 10월, (주)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 향상과 노사 협력을 목적으로 회사 간부들에게 공로주를 주고, 사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되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종업원 주식 소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삼양사, 해운공사, 해동화재, 남한제지 등에서 단편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기업들이 주식 소유 분산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활발하게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인 우리사주제도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여 이를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1968년 11월 22일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2년 12월 30일에는 우선 배정의 범위를 기발행 주식과 신규 발행 주식 총수의 10%로 확대하는 한편, 당시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에서 기업공개시 종업원에게 공개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신주인수권만 부여되었고 취득 주식의 장기 보유 조치가 결여된 데다 정부의 정책 목표 또한 종업원의 재산형성보다는 폐쇄적인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촉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가 본격화되지는 못하였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되자 기업이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하게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 소유의 분산을 통한 주식대중화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1974년 5월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를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내자 조달 및 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특별지시에 따라 「자본시장 수용태세 확립대책」이 마련되었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동년 7월 13일 재무부가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사주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 제도로서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게 한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중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비공개법

인의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사주제도를 비공개법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득한 자사주는 공개 법인은 1년간, 비공개법인은 상장시까지 수탁기관을 통하여 예탁·관리하도록 의무예탁제도를 시행하였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책 등을 마련하였다.

1987년에는 증권시장의 활황과 기업공개에의 증가로 우리사주조합 결성회사수가 크게 늘어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욕구도 재산 형성, 기업 성장 과실에의 분배 참여 등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의 주인 의식 고취, 노사협조체제 구축, 소득 재분배 및 중산층 근로자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이익에의 참가를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1987년 9월 1일 「종업원지주제도 확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 1일 시행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법적 요건이 규정되었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비율이 공개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1988년 들어 증권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사주의 장기 보유보다는 시세 차익만을 위하여 의무예탁 기간 1년이 경과하자마자 자사주를 매각하였고,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우선 배정 주식을 겨냥한 이직률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주식수가 제조업종과 일부 금융업종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1988년 6월 22일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이 제정되면서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퇴직시(예탁 후 3년 경과시 사유인출 가능)까지 장기 보유가 의무화되었으며 조합원 1인당 우선 배정에 의한 자사주 취득 한도액도 조합원의 연간 급여 총액 및 소액 주주 기준의 금액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주식의 취득을 억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장기 침체와 시가 할인율의 축소 적용 등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우선 배정 주식의 대량 실권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3년 7월 28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무 보유 기간을 예탁 후 7년(예탁 후 2년 경과시 특별사유인출 가능)으로 일부 완화하여 장기 보유 의무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1997년 4월 1일에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

## 제1편 우리사주제도에란 무엇인가 ?

라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은 의무 보유 기간을 예탁 후 1년 경과시 특별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이 가능하도록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이관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경과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사주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 즉 우선배정제도 중심의 자사주 취득, 조합원 계산에 의존하는 자사주 취득 자금 조달,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결여 등으로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논의가 사회 각계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우선 1999년 8월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응급처방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사주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ESOP제도, 영국의 AESOP제도(All-Employee Share Ownership Plan: 전종업원주식소유제도로 Share Incentive Plan이라고도 함) 등 여러 나라의 우리사주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4일에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될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제도에 대한 특별 법적 성격을 갖는 증권거래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우리사주 관련 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2002.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성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 하에 상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자사주 취득 수단의 필요성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같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5. 10.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68. 11. 2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자시법) 제정
  -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상장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우선 배정 : 신규 발행주식의 10%
- 1972. 12. 30. 「자시법」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
  - 우선 배정 범위 확대 : 기발행 주식과 신규 발행 주식의 10%

- 기업 공개시 종업원에 대한 우선 배정 : 공개 주식의 10%
- 의무예탁 : 비공개법인 상장시까지, 상장법인은 1년(조합 규약에 의함)
- 1974. 7. 13.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 발표
  - 종업원 취득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도입
  - 세제지원(저축세액공제제도 도입 : 저축금액의 5% 세액공제)
  - 비공개기업에도 증자시 10%를 우선 배정
  - 의무예탁제도 시행 : 공개법인 1년간, 비공개법인 상장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예탁(법령에 의함)
- 1987. 9. 1. 「종업원지주제도 확충방안」 발표
  -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 및 재산형성 촉진을 위한 자사주 소유확대
- 1984. 4. 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제도 도입 : 세액공제 15%로 상향 조정)
- 1987. 11. 28.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폐지
  - 법적 요건 정비 :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요건, 조합원의 자격, 우선 배정 등 규정
  -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 조정 :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세액공제한도·대출한도 확대)
- 1988. 6. 22.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식의 장기 보유 유도과 우리사주조합의 건전 운영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시행령」 개정(퇴직시까지 의무 예탁. 다만 예탁 후 3년 경과시 특별사유 인출 가능)
  -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준」 제정
- 1993. 7. 28.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시행령」 개정
  - 의무예탁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특별 사유 인출 가능 시기 조정 (예탁 후 3년 → 2년)
- 1994. 12. 22.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주식 취득 자금 및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 1997. 4. 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을 폐지하고, 우리사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증권거래법」으로 이관
- 1999. 8. 의무예탁기간 단축(7년→1년, 1999년말까지는 3년)
- 2001. 8. 14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6510호), 2001. 12. 27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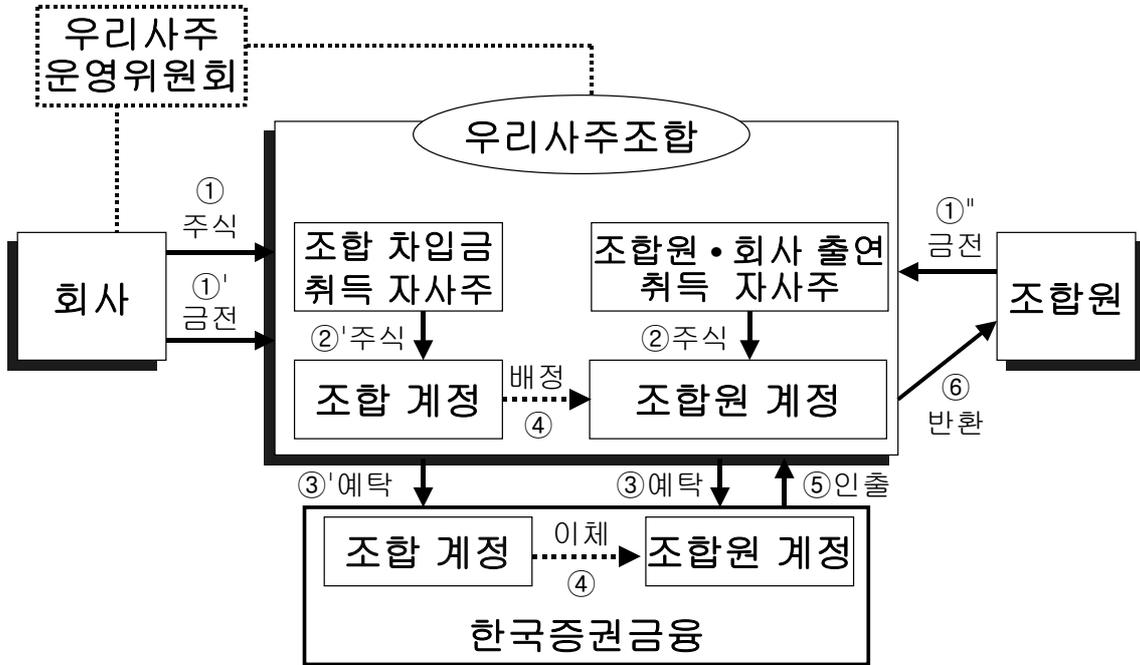
제17434호), 2001. 12. 31 같은 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81호) 각각 제정

- 우리사주제도 체계 정비
  -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취득 지원
  - 장기 보유 시스템 마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 채택 근거 마련
  - 조합 운영의 민주성,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 \*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2001. 9. 17 재정경제부, 노동부 합동으로 ESOP제도 도입방안 발표
  - 성과배분형, 이윤공유형 ESOP제도 도입
  - 세제지원 확대 추진(근로자 출연분 과세 이연 및 저율분리과세, 회사 출연분 손비 인정, 대주주 등 출연분 소득 공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증여 및 운용 수익 비과세 등)
- 2002. 1. 1. 신제도 시행(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 시행)
  - 조합원 출연금 연 240만원 한도 소득 공제를 통한 과세이연 및 저율분리과세
  - 우리사주조합의 소득 및 수증자산 등 비과세
  -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 일정액 소득 공제
- 2002. 2. 9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비상장·비등록 자·손회사의 근로자 참가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개정(2002. 3. 6 재경부장관고시2002-6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합원 출연금 과세이연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240만원 → 400만원) 및 과세 체계 변경(3년 이상 보유시 : 분리 과세 → 50%비과세)(‘03.12.30)
  - 퇴직 조합원이 일정 조건하에 처분하는 자사주(액면가 기준 1,800만원 한도)의 양도 차익 비과세(‘04.7.26.)
- 2005. 3. 31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7469호), 2005. 9. 30. 같은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74호) 및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6호) 각각 개정
  - 조합원 자격 확대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조합 해산 절차 정비
  - 가배정제도 폐지 등 자사주 배정방법 및 의무 보유 제도 개선

제 2 절 우리사주제도의 주요 내용

1. 기본 운영 구조



가. 회사 또는 주주가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가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조합은 당해 자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별로 배정하여 개인별계정에 예탁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 중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한다(그림 ①→②→③).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조합으로 회수되어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 된다.

다만, 사망·장해·정년 도달·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정 자사주의 잔여 예탁기간의 1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인출할 수 있다.

나. 회사 또는 주주 등이 현금을 출연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한 경우 동 자금은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적립된 기금은 당해 적립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는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어야 하고,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주주의 자사주 출연의 경우와 같은 경과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를 거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되어야 한다(그림 ①'→②→③).

다. 조합원이 출연한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금은 자사주 매입 전까지는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직전 회계 연도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후 6월 이내에는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되어야 한다. (그림 ①" → ② → ③)

라.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후 회사·주주가 상환을 위해 출연한 금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시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그림 ②'→③'→④).

마. 자사주의 인출

조합원 출연금 또는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1년간의 의무 예탁 기간, 회사·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인출할 수 있다(그림 ⑤ → ⑥). 다만, 퇴직·조합 해산·상장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 예탁 기간 중에도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위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을 제외하고는 배정 받은 자사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가. 조합 설립의 임의성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나.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조합의 성격

회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됨

라. 조합 가입 자격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회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즉, 모든 근로자의 회사주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또한 당해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지배 받는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①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당해 기업의 주주(소액 주주 제외) ③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④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① ~ ④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마. 회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1)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회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는 조합 설립에 관하여 협의

-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회사의 출연 계획 및 자사주 배정 등
- 회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조합 규약(안)의 작성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약으로, 그 규정이 법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⑤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⑥조합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⑨조합 해산시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4)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 \* 우리사주제도 및 규약(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 총회에서 확정되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5) 조합창립총회 개최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확정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조합 대표자(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6)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7)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신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설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중의 조합은 설립 후의 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설립 후의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설립준비위원회와 법인간의 협의 결과 및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등의 효력은 설립 후 조합을 구속하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립 신고서 제출시 또는 제출 후 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설립 신고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 3. 시사주조합의 운영

#### 가. 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합의 운영 주체는 각자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나. 조합의 운영 주체

##### (1) 조합원총회(대의원회)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①규약의 제정 및 변경 ②시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⑤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조합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총회 결의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원(대의원) 1/5 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조합 대표자(조합장)

조합의 대표자는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행위를 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

조합원총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집행하는 이사로 구성된 기관이며, 이사는 각자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가진다.

##### (4) 감사

조합의 재산 사항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조합원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는 위의 조합원총회 보고를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 감사)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 다. 우리사주운영위원회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사와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의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라. 우리사주조합의 재산 관리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조합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4.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 가. 기금의 조성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조합 기금의 재원은 ①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②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③차입금 ④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⑤그 밖의 수입금 등이 있다.

조합은 다음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당해 회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 한국증권금융
-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나. 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취득에 부수하는 비용 포함)에 사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이 퇴직·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출연기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한다.

- \* ①기금이 적어 취득한 자사주의 조합원별 배정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회사가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④비상장 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임

다. 기금의 관리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5.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가. 기본 방향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취득 방법 등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자사주 취득 방법

(1) 회사 등의 출연

회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자사주를 출연받거나 이들이 출연한 금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취득할 수 있다.

(2) 우선 배정주식의 청약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우선 배정받아 이의 청약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바, 증권거래법에 의거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의 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당해 주식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비상장법인은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 (3) 대주주의 양도 및 시장 매입 등

대주주 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및 인출 주식의 우선 매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취득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 다. 자사주의 관리

### (1) 자사주의 예탁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 취득기준일

- 우선 배정 : 신주교부일
- 대주주 등의 양도 : 주권양수일
- 주식시장 매입 : 시장 매입 완료일
- 회사 등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 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 (2)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조합이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으로 매입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고 당해 차입에 대해 잔여 의무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3) 담보 제공 방법

- 유가증권 질권 설정 방법 중 약식질(상법 제340조 제1항)

(4) 담보 제공 절차

- 조합 또는 조합원과 대출기관간의 담보계약 체결
- 수탁기관과 대출기관간의 담보관리계약 체결(위임계약)
- 대출기관·조합 연명으로 수탁기관에 질권 설정 및 해지 통보

6. 자사주의 배정

가. 주식의 배분

조합은 우선 배정 권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및 기타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의 조합원별 배분 방법을 장기 근속 및 저소득 조합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규약에 정하여야 한다.

나. 취득 방법별 주식의 배정

(1) 즉시 배정

조합원의 출자, 회사·주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2)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의 상환 배정

회사 상환 약정의 조합 명의를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차입금 상환 시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7.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가. 취득 주식의 예탁

조합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될 때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중도 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의무예탁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 ①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② 회사·주주 등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③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상환되어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 ④ 위①~③ 예탁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원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

(2) 예탁 절차

(가) 구비 서류

- 예탁 신청서
- 조합원별 주식 배정 내역 등

(나) 사무 처리 절차

상기 구비 서류와 예탁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조합 명의로의 주식예탁통장을 교부받으면 예탁이 완료된다.

조합계정 주식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대한 배정은 수탁기관에 배정명세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조합계정으로부터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의 계정이체를 통해 완료된다.

\* 예탁의 효력 : 예탁 일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경우 의무예탁기간 산정의 기산점, 각종 세제 혜택 부여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산점이 됨

나. 조합 주식의 인출

(1) 인출 사유

조합원은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를 인출 할 수 있으며,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 할 수 있다.

- ① 조합의 해산 또는 의무예탁기간의 만료
- ②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의 퇴직,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자사주는 제외)

③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 이상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인출 절차

(가) 구비 서류

- 반환 사유별 명세서
-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퇴직증명원 등)

(나) 사무 처리 절차

조합의 대표자는 상기의 구비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우선매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인출 주식이 우선 매입을 통해 조합원간에 양수·도 된 경우에는 인출 및 예탁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조합원간 계정 이체를 통해 인출 및 예탁을 처리한다.

8. 자사주의 환매수

비상장법인의 주식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예탁기간 경과 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자사주의 환매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환매수를 위해서는 주식사주조합과 회사가 사전에 환매수의 가격 결정 방법·시기·적용 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9.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가. 의결권 행사 방법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① 조합원으로부터 주총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②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여 당해 조합원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토록 하며
- ③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을 한다.

\* 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의 방법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 ① 위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의결권 행사방법상의 주총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 ②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③ Shadow Voting

### 나. 배당금 등의 처리

#### (1) 배당금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현금 또는 주식)은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조합에 귀속한다.

#### (2) 유상증자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은 조

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 기금 또는 회사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청약하거나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회사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청약한 경우 동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거나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한 경우에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 (3) 무상증자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자사주에 대한 권리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증자 신주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고,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 자사주의 잔여 예탁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증자 신주 교부일 기준으로 잔여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주식과 동일하게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 10. 주요 세제 지원 내용

### (1)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조합을 통해 자사주 지급시 전액 손비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주식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주식조합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된다.

### (2)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⑦)

주식조합원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그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3)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액면가액 기준 5천만원(2007년부터는 1,8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에 과세된다.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4)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기업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즉, 당해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하여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조합운영비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여 손비 처리를 허용한다.

(6) 회사 출연금의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분은 법인세 계산시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7) 대주주 등의 출연분 소득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sup>12</sup>)

대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근로자 출연금 소득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당해 출연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 공제는 단순한 소득 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된다. 즉, 소득 공제된 금액으로 취득된 자사주는 추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시에 과세된다.

(9)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 출연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동 조합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10) 회사 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조합원 배정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회사·주주 등의 현금 출연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또는 회사·주주 등이 직접 출연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일정한도까지는 배정 단계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엄밀히 말하면 과세이연). 이 경우 일정한도란 연간 기준으로

조합원이 당해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동 한도를 초과하여 자사주를 배정하면 당해 초과되는 자사주의 매입 가액(회사 출연금으로 매입한 주식) 또는 시가의 70%(회사가 직접 출연한 주식)는 배정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다만, 회사의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동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1) 조합 기금 운용수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우리사주조합의 조합 기금 및 조합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12) 자사주 인출시 일정금액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자사주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은 자사주(위8 참조)와 회사·주주 등의 출연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중 배정시 과세되지 아니한 자사주(위10참조)를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주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 시점에서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과세된다(9%~36%).

(13) 우리사주 양도 소득세 일정 금액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사주의 액면가액이 1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3,000만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세제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제7편 우리사주관련 세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 11. 금융 지원

### 가. 회사에 의한 지원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보조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해 줄 수 있는데, 무상 보조금은 세법상 손비로 처리되고 무이자 대여금은 인정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된다. 또한 회사는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무엇인가 ?

우리사주조합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환 약정 또는 담보·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증권금융 등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적격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12. 벌칙 규정

주무관청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2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제1장 설립 절차

### 제2장 조합규약 등 제서식 작성 요령



## 제2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제1장 설립 절차

<p>1. 조합설립의 임의성 및 설립가능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li> <li>☞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국내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임(법§2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였을지라도 당해 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면 조합 설립 가능</li> <li>▶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의 단순한 국내지점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li> </ul> </li> </ul>
<p>2. 우리사주제도 도입 검토</p>	<p>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효용성, 활용 방안, 주식 취득방법, 환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제도 교육 참석(www.ceso.or.kr 참조)</li> </ul>
<p>3.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시행령§11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회사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업무를 추진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부록 서식 참조 : 동의서)</li> <li>☞ 설립준비위원회는 2인 이상의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적격 근로자"라 함)로 구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된 준비위원 중 대표 1인을 선임하고 설립 업무를 진행</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조합 가입 적격 근로자(법§29, p59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가입 자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관계회사*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입 자격이 있음(법 §29조 및 시행령§11조의3)</li> </ul> </li> </ul> <p>* 관계 회사 : 조합이 설립된 회사("지배회사"라 함)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당해 비상장 자회사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p>	

- \* \*일정한 요건 : 관계회사 적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지배회사 조합의 동의 및 관계회사의 조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산할 것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 자격이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①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자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자격 유지 가능
  - ② 소액주주\*가 아닌 당해 회사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단, 관계회사 주주는 관계회사 근로자에 한함)
    -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발행주식총수×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소유주식수×액면가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 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위 ① ~ 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음
  - ▶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 제한 또는 신입사원의 조합 가입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 설정은 무효임
  - 예)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4. 규약(안) 작성

(영§11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이 마련한 표준 규약을 토대로 우리사주제도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약(안)을 작성하여야 함(p36 이하 상술)(부록 서식 참조 : 표준규약)

5. 회사와 협의

(영§11①, 규칙 §7)

규약(안)을 첨부하여 회사 경영진과 다음 사항을 협의함

- ① 조합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 및 지원 조건
  - ▶ 조합 설립에 필요한 소요 인력·경비 등의 지원

-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정관 개정 요청

▷ 신주인수권(상법§418) 우선 배정 ◁

- ☞ 주식회사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게 됨
- ☞ 다만, 위와 같이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은 법률 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이외의 자에게 배정될 수 있음

**【법률에 의한 주주의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 : 우선배정】**

-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정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법 §32조①)**
- ② 코스닥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은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필요에 따라 **우선 배정 할 수 있음(법§32②)**

- ▶ 다만, ①의 경우 조합원의 보유 주식수의 비율 등\*이 20%를 초과하도록 **우선배정 불가**

\* 보유 주식수의 비율 등 : (조합원 보유 주식수 + 우선 배정시 취득할 주식수 / (이미 발행된 주식수 + 신규 발행 예정 유상증자 주식수) × 100 ≤ 20%

- ▶ 또한 ②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보유 주식수의 비율 등\*이 20%를 초과하도록 **우선배정 불가**

\* 보유 주식수의 비율 등 : (조합과 조합원 보유 주식수 + 우선 배정시 취득할 주식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할 주식수) / (이미 발행된 주식수 + 신규 발행 예정 유상증자 주식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수) × 100 ≤ 20%

- ▶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상장예정법인은 ①을, 코스닥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은 ②를 법률적 근거로 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법률의 정함에 따라 상법 제418조의 “정관의 정함”이 없이도 조합원에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20%까지는 우선배정 할 수 있으나, 주주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통상은 정관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예)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안))

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정관에 의한 주주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상법§418②) : 제3자 배정】**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

예)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50, 66 참조)

③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회사의 지원(무상출연, 유상증자시 우선 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및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인력·경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지원 사항을 협의

**6. 제도설명 및 조합원 모집**

☞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목적, 효용성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설명

▶ 조합 가입·탈퇴의 자율성, 자사주 취득의 자율성, 자사주 취득에 따른 책임(이익과 손실) 부담, 의무 예탁에 관한 사항 등

☞ 조합 가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 명부 비치(부록 서식 참조 : 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원 명부)

▶ 근로자는 설립시 뿐만 아니라 설립 후에도 언제나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조합 가입 ◁

- ☞ 조합의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 조합 규약(안)을 배포하고 향후 조합창립총회에서 확정될 경우 조합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주지시켜야 함

7. 창립총회 개최  
(시행령§11②)

- ☞ 조합 규약(안)의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가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에서 규약을 확정함
  - ▶ 창립총회에는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적격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함
  - ▶ 규약 확정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함
- ☞ 확정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선임

▷ 주의 사항 : 창립 총회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 의결정족수는 규약 확정과 동일

- ☞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임된 조합장 등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부록 서식 참조 : 창립총회 의사록)

8.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시행령§11③)

-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제출(부록 서식 참조 : 신청서)
  -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작성요령 후술(p51 이하)
- ☞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부록 서식 참조 : 계약서)
  - \* 이 계약은 향후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관리를 위한 것이며, 규약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조합 설립 절차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9.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및  
신고증 교부  
신청

(시행령§11④,⑤)

- ☞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1의 서식으로 설립을 신고함(부록 서식 참조 : 설립신고서)
  - ▶ 조합의 설립신고처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 주소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이며, **신고인은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임**
- ☞ 설립신고서에는 조합 규약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 설립신고서 제출시 설립신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부록 서식 참조 : 신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
  - ▶ 설립신고 확인서 발급 신청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임

10. 조합 설립

-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의 설립사무는 종결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모든 업무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 등 임원에게 인계하고 해산함
  - ▶ 설립 신고 후 한국증권금융에 신고 사실을 팩스로 통지 함(부록 서식 참조 : 통지서)
  - ▶ 이로써 조합은 자사주 취득 및 조합 기금 조성 행위를 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대의원 선출  
(선택적 사항)

- ☞ 규약에 따라 특정 집단(선거구)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규약에 따라 적정 인원을 조합창립총회 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선임함(p40, 63 참조)
  - ▶ 조합은 선임된 대의원의 명단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설립 일정표

일정	진행 절차	주관처	대상처
D-30	우리사주제도 도입 검토 및 한국 증권금융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조합설립 추진반	
D-28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D-23	조합 규약(안)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D-20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회사와의 협의	"	근로자·회사
D-15	근로자의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	희망 근로자
D-14	조합창립총회 개최 공고	"	적격근로자
D-5	조합창립총회 개최 (조합 규약 확정 및 임원 선임)	"	"
	대의원 선임(선택적 사항)	"	조합원
D-1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	수탁기관
D	조합 설립 신고 및 신고 사실을 수탁기관에 통지	"	지방노동관서
D+1	자사주 취득 및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 결성 등 우리사주조합 업무 추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전 조합원·회사

**제2장 조합 규약 등 제서식 작성 요령**

**제1절 설립준비위원회 동의서**

	<p>☞ 근로자 2인 이상이 조합설립준비위원으로 입후보하여 동의를 구함</p> <p>▶ 설립준비위원의 수 및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점에서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복지기 본법 제28조에서 조합의 설립 주체를 근로자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준비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야 함</p> <p>☞ 동의의 방법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이 연 명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함</p> <p>▶ 작성된 동의서는 조합의 문서로 보관함(부록 서식 참조 : 동의서)</p> <p>* 기명날인 : 행위자의 명칭을 직접 자서(自書)하던 다른 방법(타 이프라이터, 활자 등)에 의하던 자기를 표시하는 명 칭을 기재하여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인장 을 찍는 것을 말함</p> <p>* 서명 : 문서에 행위자의 성명을 직접 자서(自書)하는 것임</p>
--	--

**제2절 조합 규약(안)**

<p><b>1. 규약의 성격</b></p>	<p>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 법규 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 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 의 기관을 구속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p> <p>▶ 표준 규약과 다른 정함을 하거나 기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하여 관련 법률에 저촉됨 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권유함</p>
<p><b>2. 조문별 작성 요령</b></p>	<p><b>제5조 : 조합의 소재지 기재</b></p> <p>조합의 소재지는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서울특별시 ○○구”, “○○광역시 ○○구” 또는 “○○도 ○○군 (시)” 등으로 표시함</p>

**제7조 제2항 :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기간**

조합원이 자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바, 2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기재함

**제8조 : 조합원총회**

- ▶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결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합 운영 상황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부록 서식 참조 : 우리사주조합 운영 상황 보고서)

**제10조 : 조합장**

가. 조합장의 임기(제2항)

연 단위로 제한 없이 정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을 권유함

나.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

- ☞ 조합장이 임기 만료 전에 퇴직 또는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보선된 조합장은 퇴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만을 그 임기로 하도록 한 것임

예1) 2002. 1. 1일 조합장 甲 선임, 임기 2년, 2004. 1. 1일 임기 만료

- ▶ 2003. 2. 1일 甲이 정년 퇴직으로 같은 날 乙이 조합장으로 선임됨

- ▶ 이 경우 조합장 乙의 임기는 2005. 2. 1일까지의 2년이 아니라 2004. 1. 1일까지의 11개월임

- ☞ 이는 통상 조합장과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임원의 선임을 위한 빈번한 조합원총회의 개최를 피하기 위한 것임

예2) 2002. 1. 1일 조합장 甲, 이사 乙과 丙 및 감사 丁 각각 임기 2년으로 선임

▶ 2003. 2. 1일 甲이 정년 퇴직으로 같은 날 戊가 조합장으로 선임됨

▶ 단서 규정이 없는 경우 : 2회의 조합원총회 개최

○ 차기 이사 및 감사 선임은 2004. 1. 1.

○ 차기 조합장 선임은 2005. 2. 1.

\* 조합장 戊의 임기는 2005. 2. 1일까지의 2년이 됨

▶ 단서 규정이 있는 경우 : 1회의 조합원총회 개최

○ 차기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선임은 2004. 1. 1

\* 조합장 戊의 임기는 2004. 1. 1.

다. 조합장 임기의 연장(제2항 단서 규정의 의미)

결산을 위한 조합원총회 직전 임원의 선임을 위한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과 재임 기간 중의 결산에 관한 업무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예) 2002. 1. 1일 조합장 甲 선임, 임기 2년, 회계 연도 : 1월 ~ 12월, 정기조합원 총회 : 3월 중

▶ 동 규정이 없을 경우 → 조합원총회 2회 개최

○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 조합원총회 1월 중 개최

\* 조합장 임기가 2004. 1. 1. 만료

○ 결산을 위한 정기 조합원총회 : 3월 중 개최

▶ 동 규정에 의해 정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선임 및 결산을 동시에 결의할 수 있음

\* 조합장 임기가 2004. 3월의 정기 조합원총회일에 만료

라. 조합장 유고\* 시 직무 대행(제3항)

조합장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조합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 “선임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할 수 있음

\* 유고 :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궐위 : 사망, 해임, 사임, 기타 대표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의 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는 않는 경우임
- 사고 : 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징계(해임)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함

▶ 조합장의 유고가 궐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제11조 : 이사회

가. 이사의 수(제1항)

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이사의 수를 결정하되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업무·권한이 다양하므로 조합원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사 선임을 권유함

▶ 조합원 수가 적은 경우라도 조합장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이사 선임할 것을 권유함

나. 이사회 소집 이사 수(제2항)

재적 이사 수를 감안하여 과반수의 이사 수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함

예) 재적 이사 3인 → 2인, 재적 이사 5인 → 3인 등

다. 이사의 임기(제4항)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임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2조 :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를 정함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임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제13조 : 대의원회**

가. 대의원회의 설치 여부

☞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총회의 소집에 따른 어려움을 간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이고, 그 설치 여부는 조합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나, 대의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에 정하여야 함

▶ 따라서,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규약에 명시한 경우에도 당장은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 필요시에 구성하여 운영하면 됨

☞ 대의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규약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조합원총회 결의 사항임

나. 대의원의 선임(제3항)

☞ 대의원은 특정 단위(선거구)별 그 대표자를 말하므로 “직급별”, “부서별”, “사업장별” 또는 “직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함

예) ③대의원은 팀별로 조합원수 20명당 1명, 단수 조합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각팀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대의원은 팀별로 1명(단, 조합원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팀의 경우에는 2명)을 각팀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다만, 대의원회를 당장 구성할 필요가 없는 조합은

③대의원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 대의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임

예) 조합원이 100인 이내인 경우 : 5 ~ 10인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 10인 이상의 적정 인원

- ☞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그 선거구에 속하는 조합원 중에서 그 선거구에 속하는 조합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임하여야 함

다. 대의원의 임기(제4항)

- ☞ 대의원의 임기를 정함에는 제한이 없으나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 또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원이 특정 선거구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선임하여야 함
- ▶ 즉, 선거구를 부서 단위로 정하여 대의원을 선임하는데 경리부의 **甲** 대의원이 타부서로 발령되거나 퇴직하는 경우 **甲**은 대의원직을 상실하고, 경리부는 새로운 대의원을 선임하여야 함

제14조 제2항 : 조합계정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다음의 ① ~ ③ 방법 중 회사와 협의하여 1개의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①~③ 방법의 밑줄 친 내용을 규약의 괄호에 기재함

- ①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 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단,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가 없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 ㉡ 중 1개 선택)

㉠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㉞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자사주 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 조합원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의 한 방법인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비율이 찬성 : 6, 반대 : 4로 행사되었다면, 조합계정의 주식도 찬성 : 6, 반대 : 4의 비율로 행사한다는 것임

\* 다만,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자사주가 전혀 없거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자사주가 있음에도 모든 조합원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의사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㉟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결정하거나 ㉞Shadow Voting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임

▷ Shadow Voting 예시 ◁

<당해 주주총회 참석주식 총수 100주,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 20주>

- 당해 주총 참석주식에서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 차감 : 100주 - 20주
- 만약 차감 주식수(80주)의 의결 내용이 찬성 64주(80%), 반대 16주(20%)라면,
- 조합계정 보유주식(20주)의 의결권은 찬성 16주(80%), 반대 4주(20%)로 행사함

㉟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 의결권 행사시마다 조합원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방법(1번 의안 찬성, 2번 의안 반대 등)을 정함

㉞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자사주 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 Shadow Voting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임

**제16조 : 조합 기금**

가. 조합 기금의 사용 기한(제2항)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빠른 시일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월별 적립과 기타의 수익금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 등으로 매번 자사주를 매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 매회계 연도별로 조성된 기금은 당해 기금이 조성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에 조성된 기금을 다음 회계 연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보유할 수 있음

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 조합원 출연기금과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 등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 배정 예정 주식의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함

② 자사주의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 폐지를 신청한 경우 및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비상장법인도 추후 상장시 규약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규약에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사주가 상장되지 않아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장법인의 경우 삭제하여도 무방함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당해 권리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조합별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기금 사용을 유예할 수 있음

나. 기금의 인출(제3항)

조합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자사주 취득을 위한 경우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조합원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음

- ▶ 인출한 기금은 당해 탈퇴, 자격 상실 또는 반환요청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인출 가능한 금액은 당해 조합원이 출연한 기금 및 그 운영 수익(이자) 상당액이어야 함

제17조 : 자사주의 담보 제공

가. 조합원의 차입 및 담보 제공 요건(제1항)

- ▶ 차입자 : 조합원
- ▶ 차입 목적 : 자사주 취득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조달
- ▶ 차입기관 :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금융기관\*
  - \*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 담보 제공 가능 자사주 : 차입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자사주 중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
- ▶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담보주식을 담보권에 기하여 처분할 수 없음(법§ 제37조③)

나. 조합장의 대리(제2항 및 제3항)

- ☞ 차입 및 담보 제공 행위는 차입 당사자인 조합원이 함이 원칙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대리인으로서 차입 및 담보 제공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임
- ☞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차입 및 담보 제공 행위 후 그 결과(채무액, 이율, 차입기간 등)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비치하고 조합원 개인별로 통지하여야 함

**제18조 : 자사주의 취득**

가.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절차(제2항)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은 반드시 조합을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자사주 취득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나. 조합의 자사주 취득 절차(제3항 및 제4항)

조합원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 출연 등의 조합 기금에 의한 자사주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조합 이사회가 정함

**제19조 : 취득 자사주의 배분 기준**

가. 조합의 자사주 배분 원칙(제1항)

☞ 유상증자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과 법인 및 대주주의 출연 등에 따라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의 배분은 조합원 상호간의 이해가 첨예하므로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는 정신 하에 **조합의 이사회**가 배분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 관계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한 조합은 당해 회사의 무상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관계회사의 무상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각각 배분하여야 함

예시)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조합의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자사주 배분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 매번 정하면 될 것이나, 동일한 자사주 배분에 조합원별로 동일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① 균 등 : ○○%

\* 급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분함으로써 저소득 조합원을 우대할 수 있는 배분 방법임

② 근속 연수 : ○○%

\* 장기 근속 조합원을 우대할 수 있는 배분 방법임

③ 그 밖의 방법 : ○○%

\* “직급”, “급여”, “성과” 등의 기준이 있겠으나 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할 것을 권장함

- ☞ 다만, 배분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①조합원 출연에 제한이 없는 시장 매입은 조합원의 출연금만큼 매입하여 배분하고, ②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권리에 의한 취득분은 조합원에게 그 권리대로 배정함

나. 유·무상증자 등 권리의 처리(제2항)

☞ 조합원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유·무상 증자

- ▶ 무상증자 : 회사로부터 수령 즉시 당해 조합원의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의무예탁. 단, 무상증자 신주 교부일을 기준으로 원주의 잔여 예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않음
- ▶ 유상증자: 당해 조합원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배분하여 조합원의 출연을 통해 청약하고,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아도 됨

☞ 조합계정 자사주의 유·무상 증자

- ▶ 무상증자 : 조합계정으로 예탁
- ▶ 유상증자 : 회사·주주 출연금 또는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청약하여 예탁하거나, 신주인수권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이 출자하여 청약하도록 함

※ 주의할 점은 조합원 개인별계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자사주와 달리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하여야 한다는 것임

다. 우선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제3항)

☞ 유상증자(매출 포함)시 조합원이 우선 배정 받는 근거가 ①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인 경우와 ②회사 정관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인 경우에는(통상 상장법인이 이에 해당함)

▶ 우선 배정의 제한 조건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제1호(연봉 범위 초과 금지) 및 제2호(누적적 취득 금액의 소액 주주 범위 초과 금지)와 제2항(동일 업종 합산 누적적 취득 금액의 소액 주주 범위 초과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배분은 부여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별로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제20조 : 자사주의 배정**

가. 조합원 출자금(조합원 상환 책임의 차입금을 포함)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제1항)

☞ 취득 즉시 출자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

나.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에 의한 취득 자사주(제2항)

☞ 취득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 다만, 회사·주주 등의 금전 출연일 현재 조합원이 21조 각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배정하여야 함

다.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제3항)

☞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일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차입금 상환일 현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

▶ 조합은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할 것을 의뢰함

▶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후 최초 상환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

**제21조 : 배정 자사주의 회수**

- ☞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 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초과)에 당해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으로 회수되어야 함
  - ▶ 다만, 조합원이 제21조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퇴직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원에게 인출하여 반환하여야 함
- ☞ 조합은 회수된 주식을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예탁하여야 함

**제22조 : 자사주의 예탁**

- ☞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그 밖의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제1항)
- ☞ 조합이 예탁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날(취득일이 아님)로부터 1년임(제2항)
  - ▶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당해 출연자와 협의 하여 정한 기간
  - ▶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원주의 잔여 예탁기간
- ☞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자사주는 당해 차입금의 상환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함

**제23조 : 자사주의 인출**

가. 자사주의 인출 절차(제2항)

① 인출 사유 발생 조합원이 조합에 인출 요청 → ② 조합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출 → ③ 조합은 인출주식을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반환

**제24조 : 인출 자사주의 우선 매입**

가. 우선 매입 가격(제1항)

- ▶ 상장 법인의 자사주 : 인출 전일의 최종 시세가격
- ▶ 비상장 법인의 자사주 : 매매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나. 우선 매입 시기(제2항)

- ▶ 조합은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 매입 여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 됨
- ▶ 우선 매입 의사가 없거나 우선 매입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인출 자사주를 반환하여야 함

**제25조 : 배당금과 주식 배당의 처리**

가.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과 배당주식(제1항)

- ▶ 수령 또는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

나. 조합 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과 배당주식(제2항)

- ▶ 회사·주주 상환 약정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합계정의 배당금과 배당 주식은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거나 자사주 취득 후 최초 도래하는 상환 배정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 ▶ 회사·주주 등 제3자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었다가 회수되어 일시적으로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주식과 배당금은 자사주 취득 후 회수 자사주와 합산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제26조 : 조합의 회계 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회사의 회계 연도와 동일하여야 함

**제28조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항 및 제2항)

운영위원회는 회사와 조합이 각각 동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구성함

- ▶ 위원수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 회사의 위원은 회사가 지명하는 자로서 조합원이어도 상관없음
- ▶ 조합의 위원은 조합장과 조합 이사회가 선임하는 자로서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함
- ▶ 운영위원의 임기를 정함에는 제한이 없으나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업무 수행에 효율적임

나. 운영위원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회사와 조합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 ▶ 운영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함

3. 규약 작성  
점검 사항

- ☞ 표준 규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할 것을 권유함
- ▶ 최종 작성된 규약(안)을 조합원 총회 개최 전에 한국증권금융에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 사전에 조율·점검함으로써 업무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제3절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1. 위탁계약  
신청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신청서(부록 서식 참조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신청서)를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서류의 작성

가.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의 당사자인 “○○(주)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라 기재하고 당해 설립준비위원회 대표의 개인 도장을 날인함
- ▶ 다만,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의 대리인 ○○○”라 기재하고 대리인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서 등 모든 서식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 처리함

나. 조합 규약 사본

조합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의 복사본 첫페이지에 “원본 대조필”이라 기재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가 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상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 도장**이어야 함)으로 날인하고, 넘어가는 면을 접어 간인(間印)하여야 함

\* 개인 인감이란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관할 하는 증명청(시장, 구청장, 읍.면장)에 신고한 인장을 말함

다.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부록 서식 참조 : 조합창립총회의사록)

- ☞ 가입 적격 근로자 :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의 수(數)를 기재함
- ☞ 참석 근로자 : 가입자격이 있는 위 가입 적격 근로자 중 당해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수(數)를 말함
  - ▶ 참석 근로자의 수가 가입 적격 근로자 수의 1/2을 초과한 수이어야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성립됨(시행령 §11②)
-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노동부 신고를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하나 의사록의 작성에 관한 별도의 정함은 없음(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8조)
  - ▶ 따라서, 민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 및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 및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될 것임
- ☞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본인 도장(대리인 선임시에는 인감증명법상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의사록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넘어가는 면을 접어 간인(間印)하여야 함

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본인 도장(대리인 선임시에는 인감증명법상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회사의 개황(부록 서식 참조 : 회사의 개황)

- ☞ 작성 기준일은 계약 체결 신청일의 최근일로 함
  - ▶ 다만, 최근 결산기 현황은 직전 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 ☞ 표준·종목 코드란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에 대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부여하는 고유 식별 번호를 말함

\* 예) KR + 10자리 숫자 : **KR0123456789**

- ▶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권표준코드를 신청함

▷ 주권 표준 코드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isin.krx.co.kr/>를 입력 · 표준코드 시스템 접속



② [표준코드 조회]

☞ 위 화면 “표준코드조회”메뉴에서 “개별종목별 조회” 클릭 → 열린 화면의 종목명란에 “회사 상호” 입력한 후 조회(클릭)

▶ 회사명이 조회되는 경우 : 보통주 종목코드 “KR+숫자10자리”가 표준코드에 해당됨<완료>

▶ 회사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③표준코드 신청으로 이동

③ [표준코드 신청]

☞ 표준코드 조회 결과 회사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위 화면 “표준코드신청”메뉴에서 “주권” 클릭 → 열린 화면 오른쪽 “신규등록” 클릭

▶ 열린 화면 “발행기관신청”의 각 빈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고,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권선물거래소에 팩스(번호 : 02-761-0940)로 송부

☞ 팩스 송부 후 위 화면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발행기관신청결과”클릭 후 열린 화면에서 회사의 기관코드(숫자5자리)를 확인

\* 발행기관신청 후 결과 조회시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30분 이상 경과 후에도 발행기관신청결과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전화(02-3774-8661,3) 확인하여야 함

- ☞ 발행기관신청결과 발행기관 코드를 부여 받은 후 위 화면 “표준코드신청”메뉴에서 주권을 클릭 한 후 회사 상호 입력 후 검색(클릭)
- ▶ 조회된 회사의 정보 오른쪽 끝에 있는 “선택”을 클릭한 후 열린 화면 “표준코드신청”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등록”을 클릭
- ☞ “표준코드신청” 후 위 화면 “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표준코드신청결과”를 클릭하면 종목코드 “KR+숫자10자리”가 표준코드에 해당됨<완료>
- ▶ 표준코드 신청시 입력한 e-mail로 처리 결과가 발송됨
  - \* “표준코드신청” 후 “표준코드신청결과” 조회시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됨

- ☞ 수권자본 :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
- ☞ 납입자본 :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자본금)
- ☞ 적격근로자 : 조합에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총수
- ☞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주간사 및 공모금액 등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있거나 공모계획이 확정되어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공모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바. 위임장(부록서식 참조 : 위임장)

- ☞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본인)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함
- ▶ 위임장에는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조합 관련 제서류에 설립준비위원회 대표가 개인인감을 날인함. 다만, 우리사주관리위탁 계약 신청서에는 “○○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의 대리인 ○○○”로 하여 대리인 도장 날인

\* 설립준비위원회 대표의 개인 인감이란 인감증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시장, 구청장, 읍·면장)에 신고한 인장을 말함

위탁계약은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사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준칙으로 조합 설립준비위원회 대표와 한국증권금융이 당사자가 되어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상호 승인하고 이에 날인하면 됨

▶ 조합 설립준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는 사전에 한국증권금융이 마련한 위탁계약서(부록서식 참조 :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내용의 수용 여부 등을 협의함

▶ 위탁계약은 한국증권금융 영업점에서 체결하고, 계약서는 한국증권금융이 별도로 준비하므로 설립준비위원회는 계약체결 신청시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대표(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인)의 개인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3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제1장 조합원

제2장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제3장 조합의 임원 및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제4장 의결권 행사 방법

제5장 조합 회계관리

제6장 보고·신고 사항

제7장 조합의 해산

제8장 법령상의 벌칙

제9장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항



## 제3편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제1장 조합원

<p><b>1. 자격</b></p>	<p>조합원은 당해 회사의 근로자(조합의 동의를 있는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중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 가입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가입 자격, 자격 상실 사유, 관계회사의 개념 및 관계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에 관하여는 제2편 제1장(p29) 참조 바람(법 §29, 시행령§11의3, §12)</li> <li>▶ 종전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비등기임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나 2005. 10. 1.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비등기임원이 제외됨으로써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비등기임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li> </ul>
<p><b>2 가입 및 탈퇴</b></p>	<p>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즉, 모든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지 의무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시행규칙§9)</li> </ul> <p>① 「가입」 업무의 처리(p32 참조)</p> <p>조합의 설립시와 동일하게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합원 명부에 기재·관리함</p> <p>② 「탈퇴」 업무의 처리</p> <p>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조합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해당 조합원의 탈퇴일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여 제명함 (탈퇴 조합원의 자사주 및 출연금 처리는 p135 → p133 참조)</p>

## 제2장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 1. 성 격

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법정 필수 기관임

☞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총회의 소집에 따른 어려움을 간이화하기 위한 법정 대체기관으로서, 조합원총회의 전속 결의 사항인 “규약 제·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들을 결의할 수 있는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의사결정기관임

\* 조합원총회와 비교한 대의원회의 운영 특성

- 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원총회 전속 권한인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없음
- ② 조합원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나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이 아닌 특정단위(선거구)의 조합원들이 각자 선임한 대표들로 구성됨

☞ 조합원총회는 법정 **필수기관**이므로 반드시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대의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규약에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의기관임

▶ 대의원회가 설치·운영되어도 조합원총회는 반드시 병존하여 운영되어야 함

\* 조합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기술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간주하여 이해하면 될 것임

### 2. 권 한

조합원총회는 법률 또는 규약으로 특별하게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

▶ 다음의 법정된 조합원총회 결의 사항은 규약의 정함 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도 조합장 또는 이사회 등에 위임될 수 없고,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단, ②~⑤는 대의원회 결의 가능)

-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대의원회 결의 불가)
- ②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 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총회의 종류

가. 정기 총회(시행령 §13 ①)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만, 조합원총회의 결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를 공고하는 것으로 총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음

- ▶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규약은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임시 총회(시행령 §13 ②)

① 법률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조합원 1/5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임

- ▶ 민법은 소수사원권인 소집 청구의 정수(1/5)를 정관의 정함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이러한 정함이 없음

- ▶ 따라서, 해석상 그 정수를 줄일(1/6 등 소수 사원권의 강화) 수는 있겠으나 늘릴(1/4 등 소수 사원권의 약화)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임

② 기타 조합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바, 표준규약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가 총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4. 소집의 절차

총회의 소집은 그 회의의 목적 사항 및 일시 등을 규약(표준규약 §8 ③)으로 정한 날(민법 §70 ② : 1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함

- ▶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의 대표자이나 임시총회의 경우 청구 후 3주간 내에 조합 대표자가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 조합의 대표자가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청구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음(민법 §70 ③)
- ▶ 표준 규약 제8조제2항과 같은 정함이 있으면 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특별대리인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음

## 5. 총회의 결의

### 가. 결의 사항(민법 §72)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있거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음

### 나. 의결권(민법 §73, 74)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또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될 수 있음

- ▶ 조합과 특정 조합원의 이해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특정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음

### 다. 총회의 결의(민법 §75)

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함

- ▶ 조합원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① 규약의 변경은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민법§42)

② 창립총회는 적격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11 ②)로 결의하여야 함

### 라. 의사록의 작성(민법§76)

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6.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와 동일함

☞ 대의원회란 전체 조합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조합원총회의 간이화제도로 조합원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그 설치가 자유로운 임의적인 의사결정기관임

☞ 대의원의 선출

▶ 대의원 수는 법률에 그 정함이 없는 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조합의 사정에 맞도록 정하면 됨

▶ 대의원의 선출은 특정 선출 단위(부서, 팀 등)별로 그 단위에 속하는 조합원 중에서 당해 단위의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제3장 조합의 임원 및 우리사주운영위원회

1. 조합의 대표  
(조합장)

조합의 대표자는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사무를 집행**함

☞ 조합장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임됨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갖게 되며 조합을 대표하게 됨

▶ 민법은 모든 이사를 각자 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곳곳에서 조합의 대표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만을 조합의 대표자로 규약에 정하여 다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함

▶ 조합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민법 §62)

▶ **조합과 조합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장은 대표권이 없고, 다른 이사가 대표권을 갖으며, 다른 이사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 대리인이 조합을 대표하게 됨(민법§64)

☞ 조합장의 주요 직무

- ① 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개최(법시행령§13)
- ②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 행사(법§31)
- ③ 기타 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사무 등

2. 조합의 이사  
(조합장 포함)

이사는 대내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조합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함(민법 §57)

☞ 이사는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임되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임

▶ 이사의 수와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규약에 정하면 됨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함(민법§58)

- ▶ 이를 위해 이사 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법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이 규약으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토록 표준 규약에 이를 제시하고 있음
-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규약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함
- ☞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견제하여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갖게 됨
- ▶ 내부적으로 조합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민법§61)
-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민법§65)

### 3. 감사

감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필수 기관은 아니고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 기관임(민법§66)

- ☞ 감사의 직무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자 표준 규약에 이를 규정하여 필수적 기관으로 그 설치를 유도하고 있음
- ▶ 감사는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임하여야 함

☞ 감사의 주요 직무(민법 §67)

- ① 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③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기타 조합 규약에 정하여진 업무

4.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는 임의적 협의체 기관으로서 설치여부는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 조합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으나 회사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지원 요청·협의 및 조합원의 간접적 경영 참가 등의 창구 역할을 위한 협의 기구가 필요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자유롭게 정함

\* 조합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도 있음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 내용

- ① 유상증자시 우선 배정에 관한 사항
- ② 회사의 출연 및 출연 주식의 배분·배정 등에 관한 사항
- ③ 회사의 조합 사무 운영 지원(인력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자금 지원 등

제4장 의결권 행사 방법

<p>1. 의결권</p>	<p>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voting right)이라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은 주주가 갖는 고유권한이며, 회사의 관리·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공익권으로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li> </ul>
<p>2. 의결권 행사</p>	<p>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됨에 따라 회사와의 관계에서 <b>우리사주의 주주는 조합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조합)가 아닌 <b>실질적 주주(조합원)가 행사</b>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음(법§31)</li> <li>▶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실질 주자인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li> <li>▶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전의 조합계정 보유 주식은 조합의 공동 재산으로 보아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li> </ul>
<p>3. 조합원 계정 자사주 의결권</p>	<p>조합원이 소유(조합원 개인별계정)하고 있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행사될 수 있음(시행령§17①)</p> <p>가. 의사 표시에 의한 조합원의 간접 행사</p> <p>조합장은 주주총회 개최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고, 그 의사 표시대로 조합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p> <p>예시) 甲조합원 10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찬성, 2호 안건 반대</p> <p style="padding-left: 40px;">乙조합원 5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반대, 2호 안건 찬성</p> <p>→ 조합장은 주총에서 1호 안건 : 찬성 100(甲), 반대 50(乙), 2호 안건 : 찬성 50(乙), 반대 100(甲)으로 의결권을 행사함</p>

- ▶ 조합원은 보유 주식만큼의 의결권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음
- ▶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여 됴으로써 이로 인한 추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나. 위임장에 의한 조합원의 직접 행사

조합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개최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개별 **조합원에게 확인**하고,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그 **조합원에게 위임**하여 함

☞ 이 경우 조합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조합원으로 하여금 대리 행사하게 한다는 취지의 “**대리인지정증서(위임장)**”를 조합원에게 발부하여야 함

\* 주주(조합장)가 대리인(조합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함(상법§368 ③)

☞ 조합장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당해 의결권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여(민법상의 복임권에 기하여 제3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음(민법§120, 121, 123)

예시) 조합원 丁은 보유주식 30주에 대하여 대리인을 戊로 한 “대리인지정증서”의 발부를 조합장에게 요청 : 조합장은 대리인을 丁이 아닌 戊로 하여 대리인지정증서 발부

☞ 실무상 조합원이 직접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워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조합원은 본인의 소유주식수를 기재하고 동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조합장은 별도의 대리인지정서 발급 없이 위임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예시) ① 조합원 甲 10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찬성, 2호 안건 반대
- ② 조합원 乙 5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반대, 2호 안건 찬성
- ③ 조합원 丙 40주 위임 요청 : 대리인을 본인(丙)으로 하여 대리인지정증서 발부
- ④ 조합원 丁 30주 戊에게 위임을 요청 : 대리인을 戊로 하여 대리인지정증서 발부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 ▶ ①② 의결권은 조합장이 행사 1호 안건 : 찬성 100, 반대 50  
2호 안건 : 찬성 50, 반대 100
- ▶ ③ 丙이 주총에 참석하여 대리인지정증서를 제시하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40주의 의결권을 행사
- ▶ ④ 戊가 주총에 참석하여 대리인지정증서를 제시하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30주의 의결권을 행사

다. 조합장의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조합장은 7일 동안에 위 ①의사 표시 또는 ②위임 요청이 없는 잔여 자사주의 의결권을 Shadow Voting 함

▷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

① 의 의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함

② 방 법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Shadow Voting하여야 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 ▶ 참석 주식수가 기권 또는 무효인 주식수는 반대에 산입

- ▶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단수주는 찬성인 경우에는  
절사, 반대인 경우는 절상함

실무 사례) 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상장법인의 주권에 관하여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증권거래법시행령  
§78의7,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7-24)

- 예시) ① 조합원 甲 10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찬성, 2호 안건 반대
- ② 조합원 乙 5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반대, 2호 안건 찬성
- ③ 조합원 丙 40주 위임 요청 : 대리인을 본인(丙)으로 하여 대  
리인지정증서 발부
- ④ 조합원 丁 30주 戊에게 위임을 요청 : 대리인을 戊로 하여 대리인  
지정증서 발부
- ⑤ 조합원 己 100주 의사 표시·위임 요청 없음 : 조합장이 그림  
자 투표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형태>

주주총회 참석 주식 총수 : 1,100주

- ▶ ①② 의결권은 조합장이 행사 1호 안건 : 찬성 100, 반대 50  
2호 안건 : 찬성 50, 반대 100
- ▶ ③ 丙이 주총에 참석하여 대리인지정증서를 제시하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40주의 의결권을 행사
- ▶ ④ 戊가 주총에 참석하여 대리인지정증서를 제시하고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30주의 의결권을 행사
- ▶ ⑤ 조합원 己의 주식 100주 조합장이 그림자 투표

[주총 참석 주식 총수 : 1,100주] - [의사 표시·위임 요청이 없  
는 주식 : 100] = 1,000주이고,

→ 1,000주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 찬성 597주(59.7%), ㉡  
반대 342주(34.2%), ㉢ 기권 및 무효 61주(6.1%)라면

→ 100주의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결과는

㉠ 찬성 : 59주(59.7% → 절사 : 59%),

㉡ 반대 : 41주(34.2% + 6.1% = 40.3 → 절상 : 41%)

4. 조합계정  
자사주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의 의결권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회사와 협의하여 하나의 방법을 규약에 정하고, 그 정한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함

①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의사 표시를 통한 간접 행사와 동일하게 행사

▶ 조합원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의사 표시에 의한 간접 행사의 의안별 의사 표시 비율과 동일하게 조합장이 행사

▶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이 없거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이 있어도 의사 표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경우의 조합계정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p41 참조)

예시) 조합계정 보유주식 수 : 100주

조합원 개인별계정 주식 : 310주

<조합원 개인별계정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현황>

㉠ 조합원 甲 100주 의사 표시 : 1호 안건 찬성, 2호 안건 반대

㉡ 조합원 乙 50주 의사 표시 : 1호 및 2호 안건 모두 반대

㉢ 조합원 丙 40주 위임 요청

㉣ 조합원 丁 20주 戊에게 위임을 요청

㉤ 조합원 己 100주 의사 표시 · 위임 요청 없음

▷ 의사 표시에 의한 의결권 행사(조합원 甲과 乙) 비율

→ 1호 안건 : 찬성 100주, 반대 50주 → 67% : 33%

→ 2호 안건 : 찬성 0주, 반대 150주 → 0% : 100%

<조합계정 자사주 100주 의결권 행사 방법>

▷ 1호 안건 : 찬성 67주, 반대 33주 → 67% : 33%

▷ 2호 안건 : 찬성 0주, 반대 100주 → 0% : 100%

②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 p69 참조)

③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

의결권 행사시마다 조합원총회를 열어 당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의안별로 찬·반, 기권 및 제3자에의 위임 등 다양한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 제5장 조합회계 관리

1. 회계 관리	조합은 조합 재산을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조합계정은 조합원을 위한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지될 수 있음
2. 회계 원칙	<p>조합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처리하여야 함</p> <p>▶ 조합의 회계 연도는 회사의 회계 연도와 같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3. 예산 및 결산	<p>조합의 예산 및 결산은 조합원총회의 결의 사항임</p> <p>▶ 기금의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등으로 구성</p> <p>▶ 예산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면 됨</p>
4. 장부 관리	<p>조합은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④회계 장부 및 서류 ⑤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함</p> <p>▶ 특히 조합은 기금과 주식 취득·배정 및 관리에 관한 장부가 추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p>

제6장 보고·신고 사항

<p>1. 설립 신고</p>	<p>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p51 참조) 후 3주 이내에 조합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위원 중 1인이 “우리사주조합설립신고서(부록 서식 참조 : 설립신고서)”에 날인(또는 자필서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규약 사본 1부</li> <li>②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li> <li>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④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li> </ul> </li> <li>▶ 민법상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登記함으로써 성립(민법§32, 33)되나, 우리사주조합은 주무관청의 허가과登記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임</li> <li>▶ 우리사주조합은 창립총회 종료로써 그 설립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설립준비위원회가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및 설립신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노동관서 신고”를 법상 우리사주조합의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음</li> </ul>
<p>2. 조합 이전 보고</p>	<p>조합은 설립 신고 후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부록서식 참조 : 이전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장은 주된 사무소 이전일부터 3주 이내에 “우리사주조합 사무소 이전 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b>이전한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b>에 제출함</li> </ul>
<p>3. 운영 상황 보고</p>	<p>조합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부록서식 참조 : 운영상황 보고서)</p>

▶ 조합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결산에 관한 결의를 거쳐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④ 사업보고서
- ⑤ 규약 사본(규약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⑥ 액면 분할 등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서류는 조합의 재산에 관한 서류이므로 당해 회계 연도에 조합의 운영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관련 자료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자료 목록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운영상황 보고서는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4. 조합 해산  
보고**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부록서식 참조 : 해산 보고서)

▶ 청산인은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① 조합 해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조합의 재산 목록
- ③ 조합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 계획서

## 제7장 조합의 해산

### 1. 해산 사유 (법 §제39조)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 우리사주조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할 수 없는 바,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합은 당연 해산되는 것임

- ① 회사의 파산
- ② 사업의 폐지·합병·분할·분할 합병 등을 위한 회사의 해산
- ③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경우. 다만, 자사주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간 계속하여 조합의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해산에 대한 의견 조회에 1개월 내에 존속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민법은 사단의 해산 사유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존립 기간의 만료,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조합의 해산 사유를 특정하고 있는 바, 해산 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법인의 해산사유를 증빙하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조합의 해산 사실을 통보함

### 2. 청산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조합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함

☞ 해산한 조합은 청산조합으로 바뀌고, 청산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 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장 및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조합의 집행기관이 되며, 규약 또는 총회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됨

▶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산을 보고하여야 함(부록서식 참조 : 해산 보고서)

- ☞ 해산한 조합의 재산 중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자산은 당해 조합원별의 잔여 채무 청산 후 그 조합원에게 귀속하고, 조합계정의 자산도 조합의 잔여 채무 청산 후 조합원에게 귀속함
- ▶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되는 바, 청산 후 조합의 채무가 잔존하여도 이를 조합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음

제8장 법령상의 별칙

<p>1. 지도·감독</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우리사주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문서로 보고·자료 제출 그 밖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p> <p>▶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위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p>
<p>2. 과태료</p>	<p>우리사주조합의 운영(법§30),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법§31), 자사주의 배정(법§33 ②), 우리사주조합 취득 주식의 예탁 및 담보 제공 금지(법§37①, ②), 우리사주조합의 해산(법 §39)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p> <p>☞ 국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함</p> <p>▶ 과태료부과기준은 부록 법령 참조</p> <p>▶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p> <p>☞ 조합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p>

제9장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사항

<p>1. <b>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와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실시하는 우리사주제도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 후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유함</li> <li>☞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립총회 개최 전에 조합 규약(안) 및 조합 운영 계획에 관하여 한국증권금융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조합 설립 이후에도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한국증권금융과 미리 협의하여 사전에 그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li> </ul>
<p>2. <b>담보 제공</b></p>	<p>조합은 취득한 주식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하여 담보제공가능성과 그 방법을 협의하여야 함(p146 참조)</p> <p>▶ 의무 예탁과 관련하여 <b>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b> 있을 수 있음</p>
<p>3. <b>의무 예탁</b></p>	<p>조합은 취득한 주식의 예탁을 위해 예탁 서류의 작성 및 예탁 주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한국증권금융과 사전 협의함으로써 예탁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음</p>



## 제4편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관리

제1장 주식의 취득·배정·배분 방법

제2장 주식의 취득 유형별 배정·배분 등 실무 절차

제3장 신주인수권 및 배당금 처리

제4장 퇴직자등의 주식 처리

제5장 주식의 예탁 및 반환 절차

제6장 비상장 법인의 자사주 환매수 절차

제7장 조합원 인출 주식의 우선매입 절차



## 제4편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관리

### 제1장 주식의 취득·배정·배분 방법

#### 제1절 주식의 취득 방법

#### 1.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방법

조합의 자사주 취득 방법을 그 취득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조합원이 아닌 자(제3자)의 출연 등에 의한 취득

① 자사주 보유자(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 ▶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조합에 무상 기부(출연)
- ▶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조합에 무상 기부(출연)
-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로부터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금품의 50%를 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출연받은 경우 동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② 제3자(회사, 주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가 출연한 자사주 이외의 금품 및 당해 금품의 수익금으로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함

- ▶ 유통시장 매입 : 이미 발행되어 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부터 매입

예시) 주주·회사로부터의 매입, 조합원 인출 주식 우선 매입,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입 등

\* 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되는 모든 곳을 말함

- ▶ 발행시장 매입 : 조합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취득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말함

\* 발행시장이란 새로운 주식이 발행인(회사)으로부터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도되는 시장을 말함

▷ 주의 : 조합의 유상증자 참여 ◁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근거한 우선 배정 또는 신주 교부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모두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부여한 것임**(신주인수권 양도 금지 관련 p126 참조)

▶ 따라서, 이와 같은 우선 배정 신주인수권 또는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은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청약**해야 함(실무적으로는 조합원은 조합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금전을 출연 하고, 조합이 조합 명의로 청약)

▶ 즉, 위와 같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제3자의 출연 금품 또는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조합차입금으로 청약할 수 없음

☞ 조합원 이외의 출연금 및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자

▶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주주로서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 “우리사주조합에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배정(제3자 배정) 받은 경우

▶ 회사의 이사회(또는 주총)가 실권주를 조합에 배정한 경우

나.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취득

조합원 출연금 및 조합원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금과 동 금전의 수익금으로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함

▶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방법에 관한 사항은 후술(뒷면 참조)함

다. 회사·주주가 상환을 약정한 **조합 차입금** 및 동 금전의 수익금으로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에서 **매입**(p122 참조)

2. 조합원의 자  
사주 취득  
방법

조합원은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음으로써 자사주를 취득함

가. 회사·주주 등 제3자 출연 및 회사·조합 상환약정 조합 차입금으로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위 1-가 및 1-다)를 조합 규약 및 조합 이사회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취득

- ▶ 1-가(제3자 출연)의 방법으로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받아 일정 기간(4년~8년) 의무 보유
- ▶ 1-다(조합 차입금으로 매입)의 방법으로 조합이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차입금 상환시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 받아 1년 의무 보유

나. 조합원이 금전을 조합 기금에 출연하고, 동 기금으로 조합이 발행 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 받아 1년 의무보유

☞ 출연 및 매입 절차

- ① 조합원은 금전을 조합 기금에 출연 → ② 조합의 자사주 취득 → ③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 ④ 1년간 의무예탁

☞ 조합원의 금전 출연 방법

- ① 여유 자금 또는 금융기관, 회사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연
- ② 일정 기간 동안 급여공제 및 여유 자금 분할 출연 등을 통해 적립 형태로 출연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매입 방법에 제한 없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취득하여야 함

▶ 발행시장 취득

- ① 유상증자 또는 공모(모집·매출)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통해 취득

- ②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
- ③ 유상증자시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의 주주로서 갖는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통해 취득
- ④ 유상증자시 조합계정 예탁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한 경우 동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통해 취득

※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신주인수권은 조합이 제3자 출연금 또는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청약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할 수 있음

▶ 유통시장 취득

이미 발행되어 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주주, 회사 등을 포함)로부터 매입

예시) 주주·회사로부터의 매입, 조합원 인출 주식 우선 매입,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입 등

다.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권리의 과실(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배정받음으로써 취득

제2절 주식의 배정 방법

1. 배정이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별 계정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 조합원은 배정 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의무예탁하는 것임

▶ 다만, 회사·주주의 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당해 자사주의 무상증자 주식 포함)는 배정에 불구하고 예탁일로부터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는 시점까지는 가소유권(한시적으로 사용·수익권 인정 : 일정기간 의무 예탁을 조건으로 소유권 인정)만을 갖는 것임

▶ 즉, 회사·주주의 출연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의 잔여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이전에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거나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자사주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으로 회수되어야 함(회수 자사주의 처리 방법 후술, p89)

\*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회사·주주 출연 예시 ◁

☞ 2005. 10. 1. 회사가 출연한 현금 100만원으로 조합은 2005. 10. 5. 자사주 100주를 매입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 2005. 10. 10.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함

▶ 배정 대상자 : 취득일(2005. 10. 5.) 현재 조합원(총 5명)

▶ 배정 방법 : 전체 조합원(5명)에게 균등하게 20주 배분

▶ 예탁 기간 : 배정 자사주의 50%인 10주는 4년, 잔여50%인 10주는 5년으로 출연자인 회사와 협의

☞ 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 甲, 乙, 丙, 丁, 戊의 개인별계정에 각 20주씩 배정하여 2005. 10. 10.예탁하였음

사례1> 2006. 3. 20일 주주총회에서 주당 100원의 배당금 지급 결의

- ▶ 조합원 甲, 乙, 丙, 丁, 戊는 배정받은 주식 각 20주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금(2,000원=20주×100원) 수령권을 갖음

사례2> 2008년 12.31.(배정일 부터 3년 3월 경과) 조합원 甲은 정년을 사유로 퇴직하고 乙은 전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

- ▶ 갑은 정년에의 도달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배정받은 자사주 20주를 잔여예탁기간의 1년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중도인출할 수 있음
- ▶ 乙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정받은 자사주 20주 중 예탁기간이 4년인 10주는 퇴직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수 있으나,

예탁기간이 5년인 10주의 자사주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중도 인출할 수 없고, 동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의 정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하여야 함

2. 즉시 배정  
(시행령 §19)

아래의 자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함

- ① 조합원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p102 참조)
- ② 조합원이 상환을 약정한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③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제3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 ④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배당권리로 취득하는 **배당주식**은 예탁의무가 없으므로 배당권리를 갖는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함

3. 소급 배정  
시행령 §19②

회사·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의 금전의 출연이 있을 당시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여 동 금전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실제로 배정하는 시점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은 당해 퇴직 조합원에게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함

\*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상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소급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받은 자사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조합에 회수되지 않고 중도 인출이 가능함(시행령 §21②)

4. 재배정

시행령 §21②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즉시 배정·예탁된 자사주 중 위1에서 기술(p87)한 바와 같이 조합으로 회수된 자사주는 규약 또는 이사회 의 정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되어야 함

▶ 조합은 회수된 주식, 회수된 주식의 권리로 취득하는 주식(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을 합산하여 가능한 조합원에게 재배정하여야 함

▶ 조합은 회수 사실 발생 즉시 한국증권금융에 회수 사실을 통보(한국증권금융은 당해 회수 주식을 조합계정으로 이체)하고,

▶ 재배정 내역을 회수 사실과 동시에 또는 추후에 한국증권금융에 통보(한국증권금융은 당해 주식을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재배정)

5. 차입금 상환액 배정

시행령 §19①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상환 약정으로 조합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차입금 상환시 동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예시) ① 2006. 1. 1 금융기관으로부터 100만원 차입

② 2006. 1. 10. 회사 보유 자사주 50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

▶ 매입한 자사주를 조합계정으로 예탁

③ 2007. 1. 10. 회사의 50만원 상환조건부 현금 출연

④ 출연금으로 차입금 50만원을 상환

▶ 상환액 50만원에 해당하는 자사주 25주(매입가격 기준으로 산정)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조합계정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주식과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예탁하고, 당해 주식 취득 후 최초 상환 배정 발생시에 상환 배정 자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함

### 제3절 주식의 배분 방법

**1. 배 분**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별로 몫을 나누는 것을 말함

**2. 배분 원칙**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자사주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별로 몫을 나눔에 있어서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15②)

- ☞ 즉, 우리사주제도는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이되, 저소득 조합원과 장기근속 조합원을 배려하는 제도임
- ☞ 그러나, 위와 같은 배분 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이므로 “저소득·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는 배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음
- ☞ 따라서, 주식을 배분함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없으며, 이해 당사자인 회사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조화되어 그 배분의 방법에 이해 당사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임
  - ▶ 다만, 전체 조합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는 배분은 부적격 배분일 것임
  - ▶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기준으로 특정 조합원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부적격 배분일 것임
- ☞ 조합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조합 규약에 반영하고 조합원별 주식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임

**3. 배분 방법**

배분 방법은 자사주의 취득 방법 및 근로 조건 등 조합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조합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배분 방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보겠음

가. 균등 -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배분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매입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의미에서 저소득 조합원을 우대하는 배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 근속 기간

조합원의 근속 기간이 길수록 배정 수량을 많게 함으로써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다. 직급

조합원의 직급이 높을수록 배정 수량을 많게 함으로써 상위 직급자를 우대함

라.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요소

- ☞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 또는 조합의 실정에 맞는 배분 요소를 조합 이사회가 정하여 그에 따라 주식을 배분함
- ☞ 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출연자의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함
  - ▶ “부장 및 지점장에게만 배분할 것”과 같은 조건의 출연은 부적격한 출연임
  - ▶ “부장 및 지점장을 우대하여 배분할 것”과 같은 조건으로는 출연 가능

예시) ① 조합원에게 배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총량 : 1,000주

② 조합이 정한 세부 배분 방법

- ▶ 균 등 : 30% (300주)
- ▶ 근속 기간 : 30% (300주) : 근속 기간별 가중치에 따라 배분
- ▶ 직급 배분 : 40% (400주) : 직급별 가중치에 따라 배분

▷ 균등 배분 예시 ◁

☞ 조합원별 배분 주수 = 균등 배분 주식 총수/조합원수

- ▶ 즉, 조합원이 10명이라면, 균등 배분 총수는 300주가 배분되고, 10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각 30주씩 균등하게 배분됨

▷ 근속 기간 배분 예시 ◁

☞ 전체 조합원의 근속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근속 기간별로 그룹화

- ▶ 그룹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되 장기 근속 그룹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

- 제1 근속 기간 그룹 : 15년 이상 → 가중치 : 4
- 제2 근속 기간 그룹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가중치 : 3
- 제3 근속 기간 그룹 : 5년 이상 10년 미만 → 가중치 : 2
- 제4 근속 기간 그룹 : 5년 미만 → 가중치 : 1

\* 근속기간 그룹별 가중치는 조합 이사회 등에서 조합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가중치가 클수록 배분 주식수는 많아짐)

<근속 기간별 가중치에 의한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 산정>

조합원	A	B	C	D	E	F	G	H	I	J	계
근속기간	18년	16년	13년	11년	9년	6년	4년	3년	3년	2년	
가중치	4	4	3	3	2	2	1	1	1	1	22
배분비율	0.182	0.182	0.136	0.136	0.091	0.091	0.045	0.045	0.045	0.045	1
배분주수	54.6	54.6	40.9	40.9	27.3	27.3	13.6	13.6	13.6	13.6	300

\* 배분 비율 = 조합원별 가중치 / 가중치 합계

\* 배분 주수 = 배분 주식 총수 × 배분 비율

▷ 직급 배분 방법 예시 ◁

☞ 조합원이 속해 있는 모든 직급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되 상위 직급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

- 제1급 → 가중치 : 5
- 제2급 → 가중치 : 4

○ 제3급 → 가중치 : 3                      ○ 제4급 → 가중치 : 2

○ 제5급 → 가중치 : 1

\* 직급별 가중치는 조합 이사회 등에서 조합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가중치가 클수록 배분 주식수는 많아짐)

<직급별 가중치에 의한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 산정>

조합원	A	B	C	D	E	F	G	H	I	J	계
직 급	1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5급	5급	5급	
가 중 치	5	5	4	3	2	2	1	1	1	1	25
배분비율	0.2	0.2	0.16	0.12	0.08	0.08	0.04	0.04	0.04	0.04	1
배분주수	80	80	64	48	32	32	16	16	16	16	400

\* 배분비율 = 조합원별 가중치 / 가중치 합계

\* 배분주수 = 배분주식 총수 × 배분비율

③ 이상의 배분 방법에 따른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

조합원	A	B	C	D	E	F	G	H	I	J	계
균등배분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0
근속배분	54.6	54.6	40.9	40.9	27.3	27.3	13.6	13.6	13.6	13.6	300
직급배분	80	80	64	48	32	32	16	16	16	16	400
합 계	164.6	164.6	134.9	118.9	89.3	89.3	59.6	59.6	59.6	59.6	1,000

\* 단수주(소수점 미만의 주식)의 처리는 조합 이사회가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여 배분함

예시) 단수주를 절사한 총수를 소수점 이하 상위 순위자에게 배분

▶ 위의 조합원 “A”부터 “J”의 단수 합계에 의한 총 단수주 : 6주

▶ 소수점 이하 상위 순위자 6명에게 1주씩 배분 : C, D, G, H, I, J에게 각 1주씩 추가 배분(A, B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할 경우 G, H, I, J보다 하위 순위임)

제4절 주식 취득 한도

1. 소액 주주  
범위 내 취득

조합원이 자사주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던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하던 취득한 주식의 합이 “소액 주주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p30 참조)

☞ 따라서, 조합원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취득경로 불문)와 금번에 신규로 취득하게 될 자사주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소액 주주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득 수량을 결정하여야 함

\* 소액 주주 : 발행 주식 총액(발행주식총수 × 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보유주식수 × 액면가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소액 주주 범위 계산시의 조합원 소유 주식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과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함

2. 증권거래법  
상의 우선  
배정 한도

주권상장법인 및 주식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20/100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191의7)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배정하지 아니함

① 조합원(전체 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소유 주식수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명의로 명의 개서된 주식수

\* 우선배정 주식수 산정 :  $(\text{조합원 소유 주식수} + \text{우선 배정 가능 주식수}) / (\text{이미 발행된 주식수} + \text{신규 발행 유상증자 주식수}) \times 100 \leq 20\%$

② 금번 우선 배정분 청약액과 당해 청약 직전 12월간 우선 배정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청약 직전 12월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권상장 예정법인은 동 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취득가액(납입금 : 통상은 청약 대금)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 급여 총액 :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함

③ 금번 우선배정 청약액과 당해 청약 전 우선 배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법인 발행주식(금번 모집·매출 주식 포함)총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발행주식총수의 1%×액면가)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가액의 누적액은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기준)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그 법인의 주식 모집·매출시에 우선 배정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 위 ①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상실함

▶ 위 ②의 연봉 범위와 ③의 누적적 취득한도는 각각 그 범위를 초과하는 조합원만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조합은 우선 배정된 주식을 ②와 ③의 각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합원별로 배분하여야 함

▶ 주권비상장법인이 정관상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근거로서 증권거래법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당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상기의 제반 우선 배정 한도와 관련한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p31 참조)

3. 근로자복지기  
본법상의 우  
선 배정 한도

(법§32조의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배정을 받는 코스닥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지분율 등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없음

\* 우선 배정 가능 주식수 산정 : (조합과 조합원 보유 주식수 + 우선 배정 가능 주식수 + 이미 부여 받아 보유 중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취득 가능한 주식수) / (이미 발행된 주식수 + 신규 발행 유상증자 주식수 +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수) × 100 ≤ 20%

<p>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법§32조의3 및 법시행령 §17의2⑨)</p>	<p>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모든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지분을 등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법§32의3)</p> <p>*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산정 : <math>(\text{조합과 조합원 보유 주식수} + \text{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주식수}) / (\text{이미 발행된 주식수} + \text{부여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수}) \times 100 \leq 20\%</math></p> <p>조합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부여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초과하여 부여 받을 수 없음</p> <p>* 자연력 연도(1.1 ~ 12.31)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부여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을 말함</p>
---	--

제2장 주식의 취득 유형별 배정·배분 등 실무 절차

》 일러 두기 《 자사주의 취득 유형은 크게 조합이 자사주를 직접 출연받아 취득하는 직접 취득과 조합이 1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조합 기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2차적인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간접 취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제1절 자사주 직접 취득

제1관 회사·주주 등 조합원외의 자의 자사주 출연

1. 출연의사 인 지 조합 대표자는 회사(또는 주주 등)의 조합에 대한 자사주 출연 의사 표시를 받음

2.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조합장(또는 조합 이사회)은 회사(또는 주주 등)와 주식 출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함

▶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주식 출연에 따른 세부 사항을 협의함

▶ 조합과 회사(또는 주주)는 협의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지

\*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조합의 대표자와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령§23 ③)

▶ 약정으로 체결한 내용이 규약 또는 조합이사회가 정한 기준과 다를 경우 조합장은 사전적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조합은 조합 규약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증권금융에 통보(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12)

▷ 출연시 협의 사항 예시 ◁

① 출연 시기·규모 및 출연 방법(현금 또는 자사주)

② 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4년 이상 8년 이내)

③ 출연자의 조합원별 배분 요구 사항

- ▶ 출연자가 요구하는 배분 방법이 배분 원칙(p90 참조)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④ 기타 필요한 사항

- \* ② ~ ④의 사항이 이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를 것인지, 새로이 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함

3. 자사주의 출연

자사주의 출연이란 조합이 출연자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아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 인도일을 출연일이라 함

- ▶ 조합을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하여 줄 것과 주권 뒷면의 주주명도 조합 명의("○○우리사주조합")로 변경하여 줄 것을 회사(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요청하여야 함
- ▶ 주권불소지 신고 또는 회사의 주권 불발행 등으로 출연자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자는 회사로부터 주권을 발행받아 출연하여야 함
- ▶ 다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은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 없이 출연자의 증권회사 계좌에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통해 출연받음

4. 배정 대상 조합원 확정

조합은 자사주 취득일(출연일) 현재의 조합원을 배정 대상 조합원으로 하여야 함

- ▶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출연)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하여야 함
- ▶ 배정의 지연 → 예탁 지연 → 의무보유기간 기산 시점(예탁일부터 기산) 지연 → 조합원 인출·처분 시기 지연으로 연결되어 조합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취득 즉시 배정"의 의미는 배정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배정하여야 함을 의미함

<p>5. 배분기준 결정 및 배분</p>	<p>규약 및 조합 이사회가 정한 세부 배분 기준 그리고 출연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정하되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함(p90 참조)</p>
	<p>▶ 정하여진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별 배분 주수를 산정하여 배정하고, 배정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지함</p>
<p>6. 주식 예탁</p>	<p>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배정을 완료한 후 취득일(출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명세서 등 예탁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일괄하여 예탁하여야 함(구체적인 절차 등은 4-5-1 p136 참조)</p>
	<p>▶ 조합은 예탁시에 반드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예탁기간(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예탁하여야 함</p>
<p>7. 배정 주식 회수</p>	<p>조합은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예탁기간의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별 계정의 배정 자사주를 즉시 회수하여 규약의 정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하여야 함(p87 참조)</p>
	<p>▶ 조합은 회수 사유 발생시 즉시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하거나 즉시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합계정으로 이체 하여 줄 것을 한국증권금융에 통지하여야 함</p>
	<p>▶ 다만,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합은 회수하지 않고 당해 퇴직 조합원에게 인출·반환 하여야 함</p>
	<p>*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p>

제2관 무상증자 등 권리에 따른 취득

1. 무상증자

☞ **조합계정** 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함

▶ 회사 상환약정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 보유 중인 자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는 조합계정 보유주식(원주)과 합산하여 차입금 상환 시에 상환 배정하여야 함

▶ 회사·주주 등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였다가 회수하여 일시적으로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는 회수된 주식과 합산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함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즉시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함

▶ 무상증자 신주의 의무예탁기간은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원주)의 잔여예탁기간이며, 무상증자 권리를 자사주(원주)의 잔여 예탁기간이 무상증자 신주 교부일 현재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증자 신주를 예탁하지 않아도 됨

▶ 조합은 회사로부터 무상증자 주식을 수령하면 무상증자 비율에 의해 조합원별 주식수를 계산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단주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예시)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주식수

조합원	A	B	C	D	E	합 계
보유 주수	150	180	240	270	320	1,160

① 무상증자 비율 및 단주 대금 산정 기준주가 : 8%, 주당 1만원

② 조합 수령 무상주식수 및 단주 대금 : 92주와 단주 대금 8천원

③ 조합원별 무상주식수와 단주 대금 산정 현황

조합원	A	B	C	D	E	합 계
보유 주수	150	180	240	270	320	1,160
무상증자	12	14	19	21	25	91
단주 대금	0	4,000	2,000	6,000	6,000	18,000

2. 주식배당

- ④ 조합은 91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고 1주를 단주로 매각하여 조합원에게 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 ☞ 회사 상환약정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 보유 중인 자사주의 주식 배당으로 취득한 배당주식은 조합계정에 예탁한 후 배당 주식 취득 후 최초로 발생하는 상환 배정 주식에 합산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함
  - ▶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였다가 회수하여 일시적으로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의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배당주식은 회수된 주식과 합산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함
  
-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주식의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
  - ▶ 조합은 회사의 배당 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주식 현황을 조합계정 보유 주식수와 구분하여 파악하여 둠
  - ▶ 조합은 개인별계정의 보유 주식수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조합원별 배당 주식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한 후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함

---

## 제2절 자사주의 간접 취득(조합 기금에 의한 취득)

- »일러두기«
- ☞ 조합 기금을 구성하는 재원은 그 조성 원인별로 크게 조합원의 출연금(조합원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금 포함), 조합원 이외의 자(회사·주주 등)의 출연금 및 회사·주주 상환조건의 조합 차입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이하에서는 조합 기금을 위의 세 가지 구분에 따라 각각의 재원별로 그 취득 방법과 배정·배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함

---

## 제1관 조합원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1. 조합원 출연** 조합원은 반드시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므로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필요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고, 동 출연금은 조합 기금에 편입되어 출연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짐
- ▶ 조합원은 매번 자사주 취득 직전에 필요한 금전을 출연하여 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 미리 금전을 출연하여 조합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추후 자사주 취득 시에 사용할 수도 있음
  - \*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일정 금액을 “적립금”이라 칭하는 바, 이 역시 조합원이 출연한 조합 기금으로서 출연 방법상의 차이점 이외에는 그 기금의 사용 등에는 어떤 차이도 없음
  - ▶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금전의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은 개별 조합원에게 기금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 조합원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의 과실(이자 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출연 기금에 편입됨
- 2. 출연금의 관리**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전을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관리하고,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 “조합원 개인별계정 관리”란 조합이 내부적으로 조합원별 출연 금액과 출연 시기 등을 전산 또는 장부에 조합원별 명의로 기록·유지하는 것을 말함

3. 자사주의 취득

- ▶ 조합 기금을 금융기관에 조합 명의로 예치하되,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기금의 조성 재원에 따라 취득 자사주의 배정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임
- ▶ 따라서, 조합원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과 회사·주주 출연 등 기타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계좌를 달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 또는 매입 의사에 따라 4-1-1(p85참조)의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방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 명의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

- ▶ 발행시장을 통한 취득은 가장 보편화된 자사주 취득 방법이므로 별도로 후술함(p106 이하 참조)

▶ 유통시장을 통한 취득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매입 시에는 증권회사에 조합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조합 기금을 동 계좌에 입금하여 매수하고, 매수 완료 후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계좌대체 예약

- \*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매매 보고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함
- \* 자사주 취득 기준일 : 매입 완료일(최종 매입분 결제일)
- \* 조합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 개설 방법(조합 기금 p164참조)
- \* 매입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음

②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주주 보유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 받음

4. 배정

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조합원별로 출연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함

- ▶ 자사주의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이란 형식상으로는 장부 또는 전산 매체 등에 당해 조합원의 이름과 배분된 주식의 수량을

5. 주권 수령 및 예탁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상 조합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임

▶ 조합원 개인별계정(장부 또는 전산원장) 정리

조합은 자사주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내에 “조합 명의”로 주권을 발행받아 한국증권금융에 “조합 명의”로 일괄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하여야 함

\* “조합 명의” 주권 발행이란 주주명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주주로 등재하고, 주권의 뒷면에도 우리사주조합을 주주로 기재하여 주권을 수령받는 것을 말함

▶ 발행시장을 통한 취득의 경우는 납입일 이후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수령(p108 참조)

▶ 회사·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양도자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아 회사(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게 조합을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하여 줄 것과 주권 뒷면의 주주명도 조합 명의(“○○우리사주조합”)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주권불소지 신고 또는 회사의 주권 불발행 등으로 양도자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은 양도자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주권을 발행받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주권 실물을 교부받아 예탁할 수도 있으나,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이용하여 실물 이동 없이 계좌대체를 통해 예탁하는 것이 편리함

▶ 조합은 주식을 예탁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에 의한 주식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탁할 주식을 주권의 종류별로 주식 수량을 적절히 분할하여 발행(또는 교부)하여 줄 것을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요청하여야 함

- ▶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는 바로 매도할 수 없으며,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여야 함(예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제5장 p136 참조)
- ▶ 조합은 주식 예탁을 완료한 후 조합원별 주식 예탁 현황과 예탁일을 기준으로 1년간 의무 예탁 후 인출이 가능함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제1관의2 우선 배정 주식의 취득**

**1. 우선 배정  
계획 확인 등**

☞ 조합은 회사의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관한 계획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여부를 확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모집·매출 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함(우선 배정 예외의 경우 : p94참조)

▶ 기타의 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할 수 있으나, 우선 배정은 법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여부를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임(우선 배정 예외의 경우 : p95참조)

☞ 조합원 명부 정리 및 배분 대상 확정

▶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조합에 미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자격 상실자 등을 파악

▶ 조합은 우선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배분 대상 조합원을 확정함

\*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의 조합원을, 그 밖의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현재의 조합원을 배분 대상 조합원으로 확정함

**2. 조합원에 대한 배분**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비율이 확정되면 조합 규약의 배분 기준 및 조합 이사회가 정한 세부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를 산정(p90이하 참조)하여야 함

▶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가 산정되면 조합원별로 취득 한도 초과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p94 참조)하여 조합원별 배분 주식수를 확정

▶ 조합은 미리 정한 세부 배분 기준이 없는 경우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정하면 됨

**3. 조합원의 청약**

☞ 배분 주식수와 청약 기간 등 청약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청약 기간 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의 인수·청약서를 청약대금과 함께 받음

- ▶ 조합원은 배분된 주식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청약하여야 함
  - ▶ 누구도 조합원의 청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압에 의한 주식의 청약 행위는 조합원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10조)
  - ▶ 인수·청약서 사본을 조합원에게 교부
- ☞ 청약 접수 결과 미청약된 주식에 있는 경우 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받아 미청약 주식을 재배분할 수 있음
- ▶ 조합은 미청약 주식의 2차 청약을 위해 회사가 정한 청약 마감 전에 조합원의 1차 청약을 마감함
  - ▶ 조합은 유상증자의 원활화를 위하여 사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 수량에 관한 수요를 예측하여 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 주식의 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실권을 방지할 수도 있음
- 예) 수요 예측 결과 조합원의 청약 예정 수량이 유상증자의 10%인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10%만을 우선 배정받아 실권을 방지함
- ☞ 조합원의 청약 결과를 집계하여 조합원별 청약 주식수를 확정
- ▶ 조합원별 주식 청약 명세서 작성
  - ▶ 조합 기금 원장(조합원별 청약대금 명세) 정리
  - ▶ 조합원으로부터 수납한 청약대금은 조합원이 출연한 조합 기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청약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 조합원이 출연한 조합 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와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조합 기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자사주의 취득 재원이 “조합원계정 기금인지” “조합계정의 기금인지”에 따라 그 취득한 자사주의 배분·배정 등이 달라지므로, 기금을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운영하면서 각각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4. 조합의 청약**

조합장은 청약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조합 기금(조합원 청약증거금 수납분)을 인출한 후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명의로 주식 청약서(2부)를 작성하고, 청약(대행) 지정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청약함

- ▶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을 신청한 상장법인의 조합은 청약시 **한국증권금융 계좌로의 일괄예탁신청**을 하여야함
  - ▶ 주식 청약서 사본 수령 및 보관
5. 조합원 개인  
별계정에 주  
식 배정
- ☞ 조합은 청약 후 취득할 주식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의 배정과 예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함
  - ▶ 조합원 개인별계정(장부 또는 전산원장) 마련
  - ▶ 주식 예탁과 관련한 제반 서류 작성을 준비함(제5장 참조, p136)
  - ☞ 조합은 납입일 익일에 조합원별 청약 주식을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즉시 배정함
  - ▶ 자사주의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이란 형식상으로는 장부 또는 전산 매체 등에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주식의 수량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당해 자사주의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조합 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당해 조합원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임
  - ▶ 조합(조합원)은 납입일 익일에 주주가 됨(상법§423)
  - ▶ 조합원 개인별계정(장부 또는 전산원장) 정리
6. 주권 수령
- 조합(계좌대체예탁제도 이용 신청 조합 제외)은 납입일 이후 가능한 빠른 날에 주권이 발행되도록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 주권수령의 지체는 주권의 예탁일(의무예탁 기산점)을 지연시키고, 예탁일의 지연은 곧 예탁만기일의 도래를 늦추게 됨
  - ▶ 주주명부상 등재 주주가 조합이므로 주권 뒷면의 주주명도 조합 명의로(“○○우리사주조합”)로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함
  - ▶ 중도 인출 등을 감안하여 주권의 종류별로 수량을 적절히 분할·조정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주권의 종류(형식적 분류) ◁

<통일규격주권>

① 개념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증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이 정한대로 발행되는 주권

② 사용 대상 법인(증권예탁결제원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참조)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기타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 용지의 사용을 승인한 비상장법인

단, 위 법인이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③ 주권의 종류(8종)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

<비통일규격주권>

상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만을 구비한 비규격화된 양식의 주권으로서 그 주권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나, 위 ③의 8권종으로 분리하여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통일규격 및 비통일규격에 관계없이 모두 예탁이 가능함

7. 주식의 예탁

조합은 주권 교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예탁서류를 작성하여 취득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일괄하여 예탁하여야 함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준비 사항은 제5장 p136 참조)

\* 주권 교부일 : 주권의 뒷면에 기재된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날을 말함(실무상 주권 교부 초일로 일괄 기재함)

\* 주권 발행일 : 상법 제35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앞면에 기재된 당해 주권의 주금 납입일을 말함

- ▶ 조합은 주식 예탁시 조합원별로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출연금의 소득 공제 여부, 소득 공제 규모 및 주식의 취득 가액 등을 명기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8의4)
- ▶ 의무 예탁 기간(1년) 및 세제상 혜택 기간 등은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주식이 예탁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의 예탁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 조합은 주식 예탁을 완료한 후 조합원별 주식 예탁 현황을 조합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음

제1관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취득

1.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도입  
을 위한 정관  
정비(법§32의  
2 ①, ②)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 ▶ 따라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조합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함(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 사항 ◁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함(상법 §418 ②)
- 제○○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또는 우선배정과 동시에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방법 및 교부 주식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제○○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 또는 특별)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며,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임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의 부  
여**

☞ 회사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함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지분율 등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p96참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산정 :  $(\text{조합과 조합원 보유 주식수} + \text{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주식수}) / (\text{이미 발행된 주식수} + \text{부여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수}) \times 100 \leq 20\%$

예시) 회사는 2005. 3.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함

\*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를 배제할 수 있음

i)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보통주(또는 우선주) 1,200주

ii) 부여 방법 : 자기주식(또는 신주 발행) 교부

iii) 제공기간 및 행사 방법 : 2006. 3. 20.부터 2년간 6월 단위 균 등 분할 행사

iv) 행사 기간 : 6월 단위 매 분할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v) 행사 가격 : 부여일 또는 매 분할기간 직전 거래일 현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80%

3.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

☞ 회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후 지체 없이 조합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조합은 당해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부여 수량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 다수의 매수기회를 갖는 경우 매 행사기간별 매수가격 산정 방법, 주식 병합·분할, 액면병합, 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행기한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에 대한 배분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조합원 확정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 정리 및 배분 대상 조합원 확정
  - ▶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조합에 미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자 등을 파악
  - ▶ 조합은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배분 대상 조합원을 확정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일 현재의 조합원을 배분 대상 조합원으로 확정함
- ☞ 조합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결의가 있는 후 조합 규약의 배분기준 및 조합 이사회가 정한 세부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을 산정(p90이하 참조)하여야 함
  - ▶ 조합원별 부여 수량이 산정되면 조합원별로 부여 한도(부여시 행사 가격 기준 연간\* 600만원) 초과 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을 확정
  - \* 자연력 연도(1.1 ~ 12.31)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부여 일 부터 기산하여 1년간을 말함

예시) 앞의 예시와 같은 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조합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다음과 같이 조합원별로 배분하기로 함

① 부여 대상 조합원 : 2006. 3. 19. 이사회 개최일 현재 조합원(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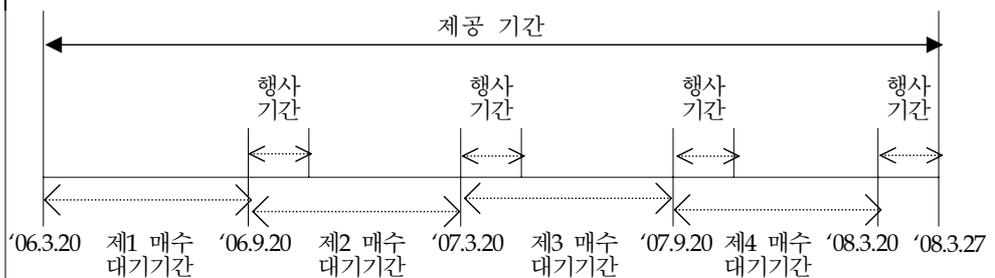
\* 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 5만원

② 배분 방법 : 균등 배분(조합원 A, B, C, D에게 각 300주)

→ 비록 부여 시 행사가격(4만원=시가5만원의 80%) 기준으로는 조합원당 1,200만원(=300주 × 4만원)의 수량이 부여되었으나 2년의 제공기간으로 연간 600만원의 부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임

③ 행사 수량 : 매 6월 단위 기간별로 75주씩 4회 분할 행사

- 제1매수 행사기간 : '06. 9. 21 ~ '06. 9. 27.
- 제2매수 행사기간 : '07. 3. 21 ~ '07. 3. 27.
- 제3매수 행사기간 : '07. 9. 21 ~ '07. 9. 27.
- 제4매수 행사기간 : '08. 3. 21 ~ '08. 3. 27.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 조합은 행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에게 행사 수량,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을 공지하고, 조합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를 인수대금과 함께 받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조합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부여 받은 수량의 전량을 행사하든 또는 일부를 행사하든 조합원은 부여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조합은 조합원이 행사시점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행사수량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명세서 작성
  - ▶ 조합 기금 원장(조합원별 행사대금 출연 명세) 정리
  - ▶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행사대금을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 기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납부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 행사기간 동안 행사하여야 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조합원이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자연 소멸함
  - ☞ 조합은 회사가 정한 행사기간 만료 전에 조합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집계한 후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명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일괄하여 행사함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사본 수령 및 보관
  - ☞ 회사는 조합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발행하여 조합에 교부함
- 6. 조합원 개인 별계정에 주식 배정**
- ☞ 조합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후 취득할 주식의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의 배정과 예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함
  - ▶ 조합원 개인별계정(장부 또는 전산원장) 정리
  - ▶ 주식 예탁과 관련한 제반 서류 작성을 준비함(제5장 참조, p136)
- 7. 주권 수령 및 예탁**
- 조합(계좌대체예탁제도 이용 신청 조합 제외)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후 회사와 계약한 주권 교부일(이행기일) 이후 가능한 빠른 날에 주권을 예탁하여야 함
- ▶ 주권의 예탁일(의무예탁 기산점)의 지연은 곧 예탁만기일의 도래를 늦추게 됨
  - ▶ 주주명부상 등재 주주가 조합이므로 주권 뒷면의 주주명도 조합 명의("○○우리사주조합")로 기재하여 교부 받아야 함

- ▶ 중도 인출 등을 감안하여 주권의 종류별로 수량을 적절히 분할·조정하여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을 신청한 상장법인의 조합은 행사 신청 시 **한국증권금융 계좌로의 계좌대체**를 통해 수령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 ▶ 조합은 주식 예탁 시 조합원별로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출연금의 소득 공제 여부, 소득 공제 규모 및 주식의 취득 가액 등을 명기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8의4)
- ▶ 의무 예탁 기간(1년) 및 세제상 혜택 기간 등은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주식이 예탁된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의 예탁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 조합은 주식 예탁을 완료한 후 조합원별 주식 예탁 현황을 조합원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음

제2관 회사·주주 등의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1. 기금의 조성	<p>☞ 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이외의 자(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조합에 대한 금전의 출연을 권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 협의</p>
2. 출연에 관한 세부 사항 협의	<p>조합장(또는 조합이사회)은 회사(또는 대주주 등)와 금전 출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출연에 따른 세부 사항을 협의함</li> <li>* 출연금에 의한 자사주 취득 방법 및 취득 시기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사주 출연시의 협의 사항과 동일함(p97 참조)</li> <li>▶ 조합과 회사(또는 대주주)는 협의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지</li> <li>*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조합의 대표자와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영§23 ③)</li> <li>▶ 약정으로 체결한 내용이 규약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과 다를 경우 조합장은 사전적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규약을 변경하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li> <li>* 조합은 조합 규약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증권금융에 통보(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12)</li> </ul>
3. 금전 출연	<p>조합은 출연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조합 기금으로 처리하여 자사주 취득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조합 기금 관리 p161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자사주 취득 시기가 특정된 경우 (이 경우도 출연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함</li> </ul>

- ▶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사주를 취득(영§18)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사주 취득 지체 → 배정 지연 → 예약지연 → 조합원의 인출시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배정 대상 조합원 확정** 조합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일 현재의 조합원을 배정 대상으로 확정하도록 함
- ▶ 다만,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주주의 기금 출연일 현재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배정하여야 함
    - \*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5. 자사주 취득** 조합은 조성된 기금으로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함(4-1-1, p83 참조)
- ▶ 조합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의 취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매입 시에는 증권회사에 조합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조합 기금을 동 계좌에 입금하여 자사주를 매수하고, 매수 완료 후 즉시 증권금융계좌로의 이체를 요청함
      - \*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매매 보고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함
      - \* 자사주 취득 기준일 : 매입 완료일(최종 매입분 결제일)
      - \* 조합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 개설 방법(조합 기금 p164 참조)
      - \* 매입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기금에서 충당함
    - ②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 실물을 교부받거나 계좌대체 제도 이용 조합은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p>6. 배분·가배정 · 예탁 및 배정 등</p>	<p>③ 발행시장(유상증자)을 통한 취득이 가능한 경우(p83 참조)에는 조합 명의로 청약하고, 납입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주권을 교부(p108 참조)받거나 한국증권금융계좌로 이체하여야 함</p> <p>▶ 실물 주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조합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과 주권을 적절한 권종으로 다양하게 분할하여 줄 것을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의뢰하여야 함</p> <p>▶ 조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사주를 매도할 수 없으며,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함</p> <p>이하 취득 주식에 대한 배분, 자사주의 예탁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4-2-1-1 &lt;기업·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gt;의 경우와 동일함(p97 이하 참조)</p>
--------------------------------------	---

제3관 조합원 출연과 회사의 대응 출연에 의한 취득

조합원의 출연을 조건으로 회사가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는 것으로 조합원과 회사의 출연이 동시에 일어남

▶ 조합원의 출연은 앞의 4-2-2-1(p102)의 조합원 출연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즉, 자사주 취득 후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

▶ 회사의 출연은 “대응 출연”에 따라 그 **배분**이 조합원의 출연금에 연동하여 확정된다는 사항 이외에는 배정 및 예탁 등 4-2-1-1(p97) 또는 4-2-2-2(p118)의 회사 출연과 동일하게 모든 업무가 처리됨

즉, 대응 출연한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함

▶ 다만, 조합원 출연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와 회사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그 예탁기간과 과세 방법이 상이하므로 비록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이나 예탁명세서를 서로 구분하여 작성·예탁하여야 함

☞ 조합장 또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금전 출연 금액에 대응한 회사의 출연 규모·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대응 출연에 관한 협의 사항 예시 ◁

- ① 대응 출연 시기, 방법, 비율
- ② 대응 출연 주식의 조합원별 배분 방법 및 예탁 기간
  - 조합원 출연금과 회사 출연금의 비율
  - 회사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
- ③ 기타 대응 출연에 관한 주요 사항 또는 조건

제4관 조합 차입금에 의한 매입

1. 조합 차입  
(법§32의4)

- ☞ 조합 차입금이란 조합원 이외의 제3자(회사·주주)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약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한 금전을 말함
  - ▶ 조합 차입금은 조합원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차입금과 회사가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차입금으로 구분되나, 조합원 상환 책임의 차입금은 조합원 출연과 유사하므로, 본 매뉴얼에서의 조합차입금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조합 차입금만을 의미함
- ☞ 조합 대표자(또는 이사회)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조합의 차입에 관하여 사전에 회사(또는 주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함
  - ▶ 회사가 조합 차입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주요 협의 사항 예시 ◁

- ① 차입금에 대한 회사(또는 주주)의 원리금 상환 여부
- ② 차입 시 회사(또는 주주)의 담보 제공 및 연대 보증 여부
- ③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시기
  - ▶ 차입금의 총액(잔액)은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의 급여총액 이내 이어야 하며, 1회계연도 신규 차입금은 직전회계연도 조합원의 급여총액의 10%와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이어야 함
- ④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
  - ▶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차입금을 매년 최소한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⑤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보유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영§17 ②)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 조합 차입을 통한 자사주 취득의 유용성은 회사가 장래에 발생할 현금을 예상하고 이를 앞당겨 조합에 출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임

- ▶ 즉, 회사가 조합에 출연할 의사는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또는 자사주)이 없는 경우에 회사가 차입 원리금의 상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음

2. 차입 결정

조합은 조합 명의 차입 및 동 차입금에 의한 자사주 취득에 관한 사항을 조합 이사회에서 정함

- ▶ 조합은 회사와의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차입 방법 및 동 차입금에 의한 자사주 취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차입 및 담보 제공

☞ 조합은 회사(또는 대주주)와의 협의에 따라 조합명의 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차입에 관하여 상담 및 차입

- ▶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조합은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는 상환 시에 담보권이 해지되어야 함을 약정하여야 함

\* 통상 금융기관은 차입금의 일부 상환에 불구하고 담보의 일부 해지를 불허(담보물권의 불가분성)하므로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대한 배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부 해지를 담보 요건으로 하여야 함

☞ 조합은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증권금융과 미리 협의하여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146 참조)

- ▶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의무 예탁해야 하므로 동 주식을 차입기관에 담보로 교부하여 점유하게 할 수는 없으며, 한국증권금융과 차입기관간의 사무 협약을 통하여 담보 관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4. 자사주 취득

유통시장 또는 발행시장을 통해 취득함(p83 참조)

5. 주식 예탁

조합은 자사주 취득 후 1월내에 조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함

- ▶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필요에 따라 주권을 적절히 분할하여 예탁하여야 함(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 조합은 주권의 발행 없이 계좌대체를 통해 증권금융계좌로 예탁)
- ▶ 조합은 주식 예탁이 완료되면 조합계정에 예탁된 주식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지

6. 차입금 상환 및 조합원 개인별 계정 배정

☞ 조합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일에 맞춰 회사(또는 대주주)로부터 차입금 원금 또는 이자 상환액 상당액을 출연받아 동 출연금으로 차입금 원금(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를 상환함

- ▶ 차입금 원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출연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분·배정함
- ▶ 전산 또는 장부상으로 조합계정에서 차감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수량을 기재함

☞ 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에 따라 과세 해당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조합원 및 원천징수업무 담당자(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원천징수토록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2의4②, p181이하 참조)

- ▶ 회사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함으로써 조합원은 당해 자사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고 그 시점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됨
- ▶ 매입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배정 금액(근로 소득)은 당해 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주식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 ▶ 연간 배정금액이 당해 조합원의 과세 이연 한도(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배정 시점에 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 회사의 상황에 의해 배정받는 경우에만 상기의 과세 이연 한도를 적용하며, 회사 이외의 자(주주 등)의 상황에 의해 배정받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전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연됨

7. 한국증권금융  
에 계정간  
이체 신청

- ☞ 조합계정에서 인출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하여 줄 것을 한국증권금융에 요청함(4-5-1-2 p142 참조)
  - ▶ “조합원별 배정 명세서” 등을 제출
  - ▶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매입가액 및 매입가액에 의해 산출된 배정 금액과 동 배정 금액의 과세 이연 여부 등을 명기하여 예탁 신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2의4⑨)
- ☞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된 날부터 1년간의 의무 예탁 기간이 기산됨
-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 내의 계정간 주식 이체가 완료되면 이번 상환에 의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이체)된 주식의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지

### 제3장 신주인수권 및 배당금 처리

#### 제1절 유상증자의 처리

#### 제1관 조합원계정 보유 주식의 유상증자 처리

<p><b>1. 신주인수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은 회사의 유상증자 시 주주가 갖는 신주인수권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b>우선 배정 받아 신주인수권</b>(p31 참조)을 갖게 되는 경우와,</li> <li>☞ 유상증자 시 조합원이 주식을 보유(조합원 개인별 계정 예탁 자사주) 하고 있는 경우에는 <b>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권</b>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음</li> <li>▶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말함(상법§418 ①)</li> </ul>
<p><b>2. 신주인수권 배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 중인 주식수에 비례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별로 배분하여 통지함</li> <li>▶ 신주인수권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이를 사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조합은 이를 이사회가 정한 바(또는 규약이 정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청약하게 할 수 있음</li> <li>▶ 이는, 조합 내부적 관계에선 조합원간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로 볼 수 있으나, 회사와의 관계에선 신주인수권의 소유자가 조합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상법상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신주인수권의 양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함(상법§416 제5호 및 제6호, §420의2 ~ §420의4)</li> <li>▶ 즉, 신주인수권 양도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님</li> <li>▶ 이러한 양도의 허용은 기존 주주의 경제적 가치(시가와 발행가액과 차이)의 환가와 신주의 발행 이후 주가의 하락에서 오는 구주에 대한 손실의 전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li> </ul> </div>

☞ 주주가 아닌 제3자로서 우선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은 위와 같은 상법상의 제한적인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의 취지인 “주주 이익의 보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제3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분이 제3자와 회사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인정(상법§418 ②)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회사와 주주가 우리사주제도의 특정된 목적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신주인수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로 보아 우리사주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단주의 처리 ◁

신주인수권이 정수로 정제되지 않고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한 경우 이의 처리에 관하여

▶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그 차액을 단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설과,

▶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하는 회사의 이사회가 그 처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이 있는 바,

▶ 신주 발행 실무는 통상 후설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조합도 실무적으로 조합원별 유상 신주인수권의 단수주를 조합의 이사회가 일정 기준으로 적정히 배분하거나 실권 처리하고 있음

예) 단주의 수치가 높은 조합원 순위로 배분, 신주인수권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배분, 신규 조합원에게 배분 등

예시) 유상증자 비율 : 20%

조합원	A	B	C	D	E	합계
주식수	125	175	214	258	370	1,142
신주인수권	25	35	42.8	51.6	74	228.4

①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주식 1,142주의 유상 신주인수권은 228.4주이나, 조합의 신주인수권은 사실상 단수주를 제외한 228주가 됨

- ② 조합원별로 배분된 유상 신주인수권은 단주를 제외하면 227주이므로 조합원별 단주 합계인 1주를 조합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함
    - ▶ 단주의 수치가 높은 순위로 1주를 배분 : 조합원 “C”가 1주를 추가 배분 받아 총 43주의 신주인수권을 갖게 됨
  - ③ 조합원 “A”가 배분된 신주인수권 25주에 대하여 청약 의사 없음을 조합에 통지한 경우
    - ▶ 조합은 조합원 “A”의 신주인수권 포기를 서면을 통해 확인하여 됴으로써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 조합은 “A”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신규 조합원 “F”에게 배분하였음
    - ▶ 조합이 “A”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 배분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조합원은 다른 주주와 동일한 날에 청약대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을 일괄하여 주간사 증권사(또는 회사)에 청약함
- ▶ 청약 결과 취득하는 유상증자 신주는 예탁의무가 없으므로
  - ▶ 계좌대체 제도 이용 조합은 신주권이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입고되므로 신주권 상장일에 비예탁주식 반환신청서를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 반환 받음
  - ▶ 계좌대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조합은 주금 납입일 이후 청약한 조합원별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조합장 명의를 해당 조합원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 제2관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유상증자 처리

조합은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확정되면 조합계정으로 보유 중인 주식수에 비례한 신주인수권을 확인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 및 행사하게 될 경우 그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

- ▶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각각 보유 주식수가 있어도 주주가 조합 명의로 동일하여 회사는 합산하여 신주인수권을 통지하게 되므로 이를 조합이 증자 비율을 감안 계정별로 나누어야 함
- ▶ 조합계정 유상 신주인수권의 처리에 관하여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 이사회가 정하여야 할 것임

<조합 규약 또는 조합 이사회가 정한 방법별 사무 처리>

①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 기금으로 청약”하도록 정한 경우

- ▶ 조합은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조합 기금으로 지정된 청약처에 청약함
- ▶ 동 신주인수권의 청약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의 배분·배정, 예탁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등은 4-2-1-1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또는 4-2-1-4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차입금에 의한 매입의 경우와 동일함(p97 및 p122참조)

②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 기금으로 청약”하도록 정한 경우

- ▶ 조합계정 신주인수권의 조합원별 배분·청약,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및 예탁 등은 4-2-2-1의2 <조합원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우선 배정 자사주 취득>의 경우와 동일함(p106 참조)
- ▶ 주의할 것은 조합원개인별계정 보유 주식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가 의무예탁 대상이 아닌 반면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 예탁하여야 한다는 사실임

제2절 조합 수익금(배당금 및 기금 이자)의 처리

<p>1. 조합계정 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주주상환 약정의 조합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전(배당금, 무상증자 단주 대금, 합병 교부금 등)은 자사주 취득 후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후 최초로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 배정분과 합산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li> </ul> </li> <li>☞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었으나 회수되어 조합원에게 재배정되기 전 일시적으로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권리로 취득하는 금전(배당금, 무상증자 단주 대금, 합병 교부금 등)은 자사주 취득 후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하여 조합계정에 일시 보유 중인 회수 주식과 합산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li> </ul> </li> </ul>
<p>2. 조합원 개인별계정 수익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의 배당금은 수령 즉시 당해 조합원별로 배분하여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회사의 배당 지급 기준일(결산일) 현재 조합원 개인별계정 소유 주식수와 배당 소득세 비과세 여부(p181 이하 참조)를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함</li> <li>▶ 배당금 지급시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조합에 배당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이를 조합이 수령하여 다시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나, 회사가 조합의 통지를 받아 실제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지급함이 효율적인 업무일 것임</li> </ul> </li> <li>☞ 조합원이 출연한 기금의 과실(이자 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출연금에 합산하여 4-2-2-1&lt;조합원 출연 조합 기금에 의한 매입, p102&gt;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li> </ul>

제4장 퇴직자 등의 주식 처리

제1절 퇴직자의 주식 처리

1. 인출 가능  
주식

조합원은 퇴직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중 잔여 의무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하여 즉시 인출할 수 있으며,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와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인출할 수 없음

▶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모두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인출할 수 있음

▶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 예탁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므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고 조합에 회수됨

▶ 다만, 조합원의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의 1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모두 인출할 수 있음

\*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조합원의 퇴직 사유가 위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회수되어 재배정 절차를 따름 (p89 참조)

2. 우선 매입  
결정

조합은 규약에 “인출 주식의 우선 매입”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인출할 주식의 우선 매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우선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매입 가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장주식 : 인출 전일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일의 매매기준가격)

② 비상장 주식 : 적정 시가를 고려한 매매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임

\* 비상장 주식은 매매 당사자간 매매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조합은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반환하여야 함

- ▶ 우선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 조합원과 조합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의 성립을 명확히 하여야 함
- ▶ 우선 매입 주식은 다시 의무 예탁해야 함
  - ① 우선 매입자가 다른 조합원인 경우(조합원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조합은 해당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 ② 우선 매입자가 조합인 경우(회사·주주 출연금 또는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차입금으로 매입한 경우)
    - 4-2-2-2<회사·주주 등의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p116 참조> 또는 4-2-2-4<조합 차입금에 의한 매입, p122>에 조합원 개인별계정 또는 조합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 3. 주식의 인출

조합은 조합원이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증빙 서류(퇴직 증명서 등)를 첨부한 인출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 조합원의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여야 함(p131, 149 참조)

-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증명서에 불가피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 인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 서류와 예탁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권의 이동 없이 조합원 개인별 계정간 이체로 인출과 예탁을 동시에 처리함

### 4. 인출 주식의 과세

인출 주식을 반환하기 직전 또는 우선 매입의 경우에는 당해 매매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인출한 주식이 과세 대상 주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와 협의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 p181이하 참조)

- ▶ 인출 주식이 조합원의 출연 기금으로 취득된 경우로서 당해 출연 기금이 소득 공제되었었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
- ▶ 인출 주식이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 또는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자사주 인출 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 주식에 관한 명세서를 발급 받아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li> </ul>
<p><b>5. 인출 주식의 반환</b></p>	<p>조합은 인출 주식에 대한 과세 처리가 완료되었고, 당해 인출 자사주에 대한 가압류·압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출 주식을 즉시 퇴직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인출한 주식을 회사(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주주명부에 퇴직 조합원을 주주로 변경 등재하여 반환함. 다만,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 조합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인출 조합원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반환하면 될 것임</li> <li>▶ 인출 주식을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퇴직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 자사주 반환을 명확히 하여야 함</li> </ul>
<p><b>6. 출연 기금의 반환</b></p>	<p>조합은 퇴직 조합원이 출연한 기금 중 아직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기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퇴직 조합원의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자 상당액)도 출연금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li> <li>▶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출연 기금의 소득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이를 원천징수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함</li> <li>▶ 퇴직 조합원으로부터 출연 기금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징구하여 출연금 반환을 명확히 하여야 함</li> </ul>
<p><b>7. 소급 배정 여부 확인</b></p>	<p>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써 당해 퇴직일 현재 회사·주주 등의 금전 출연이 있다면, 조합은 추후 자사주를 취득하여 배정하는 날 당해 퇴직 조합원에게도 배정하여 인출·반환하여야 함(영 §19②, p88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급 배정에 의한 조합계정 예탁 주식의 인출·우선 매입·과세 여부·반환 등은 전술한 2. ~ 5.를 참고하여 처리하면 됨</li> </ul>

제2절 자격 상실(탈퇴) 조합원의 주식 처리

1. 등기 임원

- ☞ 조합원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등기 임원)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와 부여 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 그러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임원 선임에 따른 퇴직을 사유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4-1<퇴직자의 주식 처리, p131>과 동일하게 처리
- ▶ 등기 임원 선임을 사유로 하는 퇴직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므로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중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인출할 수 없음
- ▶ 당해 자격 상실 조합원이 출연한 자사주 미취득 기금 역시 4-4-1<퇴직자의 출연금 반환, p131>과 동일하게 반환하여야 함

2. 소액 주주 범위 초과

- ☞ 조합원이 소액 주주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중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회수되고, 1년 이하인 자사주는 회수되지는 않으나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에 인출할 수 있음
- ▶ 자격 상실 조합원의 주식이 의무 예탁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반드시 인출·반환되어야 함
- ▶ 자격 상실 조합원의 미인출 주식은 의무 예탁 기간을 위하여 단순하게 예탁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이 아니므로 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음
- ▶ 자격 상실 조합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그 권리가 실효되어 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은 감소함
- ▶ 의무 예탁 기간 만료 시 주식의 인출·반환 등의 업무는 4-4-1 <퇴직자의 주식 처리, p131>의 경우와 동일함
- ☞ 당해 자격 상실 조합원이 출연한 자사주 미취득 기금 역시 4-4-1 <퇴직자의 출연기금의 반환, p133>과 동일하게 반환하여야 함

3. 탈퇴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조합에 표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자사주 및 출연금에 대한 처리는 2. <소액 주주 범위 초과>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동일함

## 제5장 주식의 예탁 및 반환 절차

### 제1절 주식 예탁

#### 1. 예탁

☞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함

▶ “조합계정 예탁” 대상 자사주는 주로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이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서 회수되는 자사주\*도 재배정 전에는 조합계정으로 예탁됨

\* 회사·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한 자사주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이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에 회수되어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됨

▶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대상 자사주는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이외의 모든 자사주임

☞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의 예탁자계좌(계좌번호 800-13)로 취득한 자사주를 계좌대체하여 예탁하고, 계좌대체 예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조합은 실물 주권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매도자로부터 인도받아 예탁하여야 함

\* 계좌대체 예탁제도는 조합(상장법인의 조합에 한함)이 취득한 자사주를 실물 주권으로 예탁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결제원에 개설된 한국증권금융 계좌로 계좌대체를 통해 예탁하고, 인출시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증권회사 계좌로 반환받는 제도를 말함

▷ 실물 주권 수령시 주의 사항 ◁

① 회사·주주 등으로부터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 회사·주주 등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아 다음 사항을 회사(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요청하여야 함

㉠ 조합을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하여 줄 것

㉡ 주권 뒷면의 주주명을 조합 명의(“○○우리사주조합”)로 변경하여 줄 것

㉔ 기타 필요한 경우 주권을 분할하여 줄 것

\* 주권의 분할 : 조합은 취득 주식을 일괄하여 예탁하나, 추 후 조합원별로 인출하여 반환(중도 인출 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취득 주권을 전체수량·조합원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할할 필요가 있음

예) 취득 주식 100주권 1매 → 권종 분할 : 1주권 10매, 5주권 6매, 10주권 6매

▶ 회사·주주 등 양도자가 주권 불소지 신고 또는 회사의 주권 불발행 등을 사유로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와 함께 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에 주권 발행을 청구하여 교부받아야 함

② 우선 배정 및 유·무상증자 등 발행시장을 통한 주식의 취득

▶ 조합은 납입일(또는 권리기준일) 이후 가능한 빠른 날에 주권이 발행되도록 위 ㉑ ~ ㉔을 명시하여 회사(명의개서대리인)에 청구하여야 함

▶ 조합은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내에 자사주를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자사주 취득 기준일>

- ① 우선 배정, 유·무상증자 등 발행시장 취득 : 신주권 교부일
- ② 회사·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입 : 주권 양수일
- ③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매입 : 매입 완료일(최종 매입분 결제일)
- ④ 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2. 예탁 기간

☞ 조합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될 때까지 예탁하여야 함

-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중도 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의무예탁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함
  - ①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② 회사·주주 등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③ 회사·주주상환 조건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상환되어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 ④ 위①~③ 예탁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원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
- \* 조합원은 의무예탁기간 경과 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탁중인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i)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 : 퇴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상장 폐지 신청 또는 상장 폐지 확정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ii)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 : 사망·장해·정년도달·구조조정·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1관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1. 예탁 주식

☞ 조합이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하여야 할 자사주는 조합이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된 자사주**(p88 참조)로, 이에는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가 있음

▶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

- ① 조합원이 출연한 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② 회사·주주 등 조합원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 ③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의 권리로 취득한 무상 증자 주식

▶ 조합계정에 예탁된 자사주

- ① 회사·주주 상환조건의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수탁기관에 예탁된 자사주
- ②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었다가 회수되어 아직 조합원에게 재배정되지 않고 조합계정으로 수탁기관에 예탁된 자사주

☞ 조합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사주의 개인별계정 예탁은 “계정간 이체 예탁”으로 제2관(p142)에서 후술하고, 이 관에서는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직접 예탁하는 경우만을 설명함

2. 예탁 서류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공통 서류와 자사주의 취득 사유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음

가. 기본적 공통 서류

- ◆ 예탁 신청서
- ◆ 조합원별 주식 명세서(전산 파일 자료 포함)
- ◆ 주식 취득 자금 내역서

나. 취득 사유별 각 해당 서류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 ◆ 증자에 관한 회사 이사회 의사록 사본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 무상증자에 관한 회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다. 예탁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제4관 p146참조)

- 질권 설정 · 말소 신청서
- 조합원의 담보 제공 신청서

**3. 통장 개설**

조합은 자사주의 예탁을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함

- ▶ 수탁기관과의 자사주 예탁 및 인출은 통장을 통해 거래하므로 조합은 설립 후 최초 예탁 시에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거래 내역을 기재하는 통장을 발급받아야 함
- ▶ 조합은 자사주의 예탁 · 인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제증서 및 서류에 날인할 조합의 사용인감과 법인의 사용인감을 신고하여야 함

**【예탁 통장 개설 및 사용 인감 신고 서류】**

◆ 조합장 실명 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조합 사용 인감 신고서

◆ 회사 사용 인감 신고서

\* 퇴직 증명서 등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할 사용 인감을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위임장(조합장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4. 예탁 점검**

조합은 예탁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사전에 한국증권금융에 FAX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서류 작성의 오류 여부를 점검

- ▶ 조합은 자사주 취득 업무와 동시에 예탁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 · 준비하고, 주권을 수령 · 예탁하기 전에 그 준비된 서류를 미리 FAX 또는 E-Mail을 통해 제출하여 잘못된 서류의 정정 · 보완을 점검받음으로써 예탁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5. 예탁 절차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와 예탁 서류를 준비하여 예탁을 완료하여야 함

예탁 서류, 예탁 통장 및 증권납입전표를 제출하여 예탁을 신청함  
\* 최초 예탁의 경우에는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출한 증권납입전표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이를 주권과 함께 예탁함  
\*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 조합은 증권납입 전표 및 주권 제출 없이 증권금융 계좌로의 계좌대체 이체 처리하면 됨



제출한 증권납입전표에 담당자의 주권 입고 확인을 받아 수령함



우리사주관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음  
\* 우리사주관리수수료율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 (ceso.or.kr)에 게시되어 있음  
\* 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액 및 입금 계좌를 문의하여 예탁일에 입금 처리함



예탁 주식수가 기재된 통장을 수령함으로써 예탁이 완료됨

- \* 설립 후 최초로 예탁하는 조합은 당일에 통장이 신규로 발급되므로 통장 없이 예탁 신청함
- \* 증권납입전표는 한국증권금융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예탁일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됨

제2관 계정간 이체 예탁

<p>1. 계정간 이체 예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예탁된 자사주는 차입금의 상환에 따라 상환금에 해당하는 자사주가 조합계정에서 차감되고,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되어야 함</li> <li>☞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었다가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예탁된 자사주는 재배정 하는 자사주만큼이 조합계정에서 차감되고, 재배정 대상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되어야 함</li> <li>▶ 조합은 조합계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사주를 조합원별 명의(조합원 계정)로 변경 표시하는 장부(또는 전산)상의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계정에 대한 배정으로 조합원은 의무 예탁에 따른 처분권 제한을 제외하고는 배정된 자사주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됨</li> </ul> </li> <li>▶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조합계정으로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변경·예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변경·예탁일로부터 배정주식에 대한 의무예탁기간 및 장기보유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기산(起算)됨</li> </ul> </li> </ul>
<p>2. 이체시 구비 서류</p>	<p>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하여 예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개인별계정 이체 신청서</li> <li>◆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내역서(전산파일 자료 포함)</li> </ul>
<p>3. 이체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배정일 또는 배정일 직전에 해당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계좌간 이체를 통한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을 신청함</li> <li>▶ 계정간의 자사주 이체는 조합이 예탁한 주식 총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예탁 통장상의 변경 표시는 없음</li> </ul>

- ▶ 계정간의 이체를 통한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개인별계정 이체 확인서”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발급받아 배정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 ▶ 조합계정 예탁시에는 주식관리수수료만 부과되므로 계정간 이체에 따른 조합원 개인별 계정 예탁시에 조합원 관리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수수료 금액을 문의하여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음

제3관 조합계정 예탁

<p>1. 예탁 주식</p>	<p>“조합계정 예탁” 대상 자사주는 주로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이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서 회수되는 자사주*도 재배정 전에는 조합계정으로 예탁됨</p> <p>* 회사·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예탁한 자사주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이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에 회수되어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됨</p>
<p>2. 예탁시 구비 서류</p>	<p>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중인 자사주를 회수하여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기 위해서는 “계정간 이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탁 신청서</li> <li>◆ 주식 취득 자금 내역서</li> <li>◆ 회사·주주와 체결한 상환 약정서 사본 및 금융기관과 체결한 차입(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li> <li>◆ 예탁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p14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권 설정·말소 신청서</li> <li>- 조합의 담보 제공 신청서</li> </ul> </li> </ul>
<p>3. 통장 개설</p>	<p>설립 후 최초로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실적이 있는 조합은 그 당시 발급 받은 통장을 사용하면 되므로 다시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통장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시와 동일함(p140참조)</p>

4. 예탁 절차

조합은 예탁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사전에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 그 적정성을 협의함으로써 예탁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이하 예탁 절차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절차와 동일함

제4관 예탁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해지 절차

1. 담보 제공

- ☞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예탁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가.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 자금 또는 생활 안정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차입하고,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자사주(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함)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조합 또는 조합원은 위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의 실행(담보물의 처분)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나. 조합이 차입한 금전으로 매입한 조합계정의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이 경우 조합은 차입금의 일부 상환시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을 위해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담보 해지가 되어야 함을 대출 금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위와 같은 담보 제공 차입은 다음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함
  - ▶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 소속 법인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2. 담보 제공 방법

- ☞ 주식의 담보 제공 방법으로는 질권이 있으며 질권은 그 설정 방법에 따라 등록질과 약식질로 구분됨
  -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불이행시에 그 물건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 물건임
    - \* 등록질 : 담보 제공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외에 주주명부 및 주권에 질권자(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함(상법§340)
    - \* 약식질 : 담보 제공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상법§338)
  -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므로, 질권의 성립요건인 담보물의 채권자에 대한 인도와 대외적 인정 요건(제3자 대항 요건)인 채권자의 주권 점유가 불가능함에 따라 유효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 ☞ 따라서, 예탁된 자사주의 질권 설정은 자사주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이 채권자와의 사전 약정을 통해 예탁 자사주를 담보물로 대리 수령 및 점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음
  - ▶ 결국, 조합 또는 조합원은 한국증권금융과 담보관리약정을 체결한 대출기관(채권자)에 한하여 담보 제공이 가능함
  - ▶ 예탁된 자사주는 조합원별로 주권이 특정되지 않고 동종의 주식이 혼합되어 보관·반환되므로, 주권에 질권자명을 기재함에 따라 조합원별로 주권이 특정되어지는 등록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기관에 한국증권금융과 담보관리약정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대출기관의 담보관리약정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담보관리 약정 ◁

- ① 약정 내용
    - 담보물 대리수령과 담보주식의 점유 및 이에 부수하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② 약정 체결
    - 대출금융기관과 한국증권금융이 동 협약을 체결함
  - ③ 약정 체결 가능 기관
    - 조합의 소속법인, 소속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 담보제공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약정서 세부내용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예탁 주식 담보 설정” 업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3. 담보권 설정 절차

채권자(질권자)는 조합이 당해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담보 관리를 요청하여야 함

- ▶ 채권자의 통지 도달로 예약된 자사주에 대한 담보 관리 위임 업무가 발생하고, 한국증권금융은 동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함

<담보 설정·말소 청구 시 필요 서류>

- ①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 ② 조합원 담보제공 신청서(질권 설정 청구 시에 한함)

4. 담보권 해지 절차

☞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에 대하여 담보권 해지를 요청하고, 대출기관은 상환받는 즉시 한국증권금융에 담보권 해지를 통보하여야 함

- ▶ 차입금을 상환한 조합원을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의 자사주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 ▶ 회사·주주상환 약정의 조합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사주는 차입금의 일부 상환이 있는 경우에 일부 상환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의 일부 해지가 가능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채권액 전부의 상환 전에는 통상 담보권의 일부 해지를 허용 하지 않음(담보물권 불가분성 : 민법§343에서 §321 준용)

☞ 대출기관의 담보권 해지 통지의 도달로 당해 자사주에 대한 한국증권금융의 담보 관리 업무는 종결되고, 조합은 해당 주식을 인출할 수 있음

- ▶ 조합계정의 경우에는 담보권 해지가 완료된 후 대출금 상환액 한도 내에서 조합계정의 주식을 상환 배정에 의한 방법으로 조합원계정으로 이체 의뢰해야 함

제2절 주식 인출

1. 인출 사유

☞ 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사주를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모두 인출할 수 있으며,

\* 조합의 해산 사유 : 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합병·분할·분할 합병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

▶ **잔여 의무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는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의무예탁기간 만료 전에도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예탁기간에 상관 없이 당해 조합원 개인별 계정의 모든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사망,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상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①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 ②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 ③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 ④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자사주는 제외

☞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거나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될 수 있으며, 해산을 사유로 인출된 자사주는 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을 위한 조합계정 자사주의 인출은 사실상 주권의 움직임 없이 계정간 이체를 통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바로 예탁됨

2. 인출 절차

가. 인출 사유 적격 여부 확인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청이 있거나 조합이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인출 사유가 법령의 적격한 인출 사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나. 회수 주식의 재배정 여부 결정

조합은 조합원이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로써 회수되는 자사주가 있다면 다른 조합원에게 즉시 재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계정으로 이체 한 후 나중에 재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우선 매입 여부 확인

조합은 규약에 “인출 주식의 우선 매입”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할 주식의 우선 매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우선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우선 매입 대상은 인출 예정 주식(조기 배정 인출 예정 주식 포함)이며, 우선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 조합원과 조합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의 성립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우선 매입 주식은 다시 의무 예탁하여야 함

① 우선 매입자가 조합원인 경우(즉, 조합원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 조합은 해당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② 우선 매입자가 조합인 경우(즉, 공동 소유 기금에 의한 매입)

→ 4-2-2-2<회사·주주 등의 출연 기금에 의한 매입, p118>에 따라 조합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라. 인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자사주 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공통 서류와 인출 사유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음

① 기본적 공통 서류

◆ 반환 청구서

◆ 반환 사유별 명세서(전산 파일 자료 포함)

② 인출 사유별 추가 서류(기간만료 인출 시에는 추가 서류 없음)

**【퇴직】**

◆ 회사가 발행한 퇴직 증명서

- \*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를 퇴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함

**【조합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회사의 해산 등기부 등본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주식매수청구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철회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철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이 가능함

◆ 합병 결의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게 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회사가 발급한 주식매수청구 내역서

마. 인출 청구

☞ 조합은 준비한 위 “라”의 인출서류와 예탁 통장 및 조합장 직인을 준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인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계좌대체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실물 주권 예탁 조합은 한국증권금융 영업점에 비치된 “증권청구전표(조합장 직인날인)”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함

▶ 인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 서류와 예탁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인출과 예탁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주권의 이동 없이 업무를 종결할 수 있음

**3. 인출 주식의  
과세**

조합은 인출 주식을 반환하기 전 또는 우선 매입의 경우에는 당해 매매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인출한 주식이 과세 대상 주식인지의 여부를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원천징수토록 통지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 p181 이하 참조)

- ▶ 인출 주식이 조합원의 출연 기금으로 취득된 경우로서 당해 출연 기금이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
- ▶ 인출 주식이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

\* 회사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과 직전연도 급여총액의 2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는 개인별계정 배정 시에 과세됨

- ▶ 조합은 자사주 인출 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 주식에 관한 명세서를 발급 받아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토록 하여야 함

**4. 인출 주식의  
반환**

☞ 조합은 인출한 자사주를 즉시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함

- ▶ 상장회사의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증권회사 계좌를 확인하여 입고하고 입고증서를 보관하는 방법의 반환 처리가 바람직함
- ▶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주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함

→ 조합원은 수령한 주권을 회사(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시하고,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을 주주로 등재하여야 함

☞ 인출된 자사주는 관계 법령상 우리사주조합 주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음

- ▶ 조합은 예탁 기간을 경과하여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이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제3절 예탁 및 반환 관련 제신고

1. 조합장 변경	<p>조합장이 변경된 경우 선임 조합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 첨부 : 조합장 선임에 관한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의사록 사본</p> <p>* 조합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첨부 하여야 함(이하 모든 신고에 동일하게 적용됨)</p>
2. 조합인감 변경	<p>신고된 조합의 인감이 분실·멸실 또는 마모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 첨부 : 인감 신고서</p>
3. 회사 상호 변경	<p>회사 상호가 변경된 경우 조합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 첨부 : 조합 및 법인 인감 신고서 각 1부(상호변경에 따른 인감변경)</p>
4. 회사의 인감 변경	<p>조합은 회사의 인감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 첨부 : 인감 신고서</p>
5. 통장분실 및 재발급 신청	<p>통장을 분실한 경우 조합장 및 조합 업무 담당자는 즉시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통장 분실 및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6. 조합인감 분실</p>	<p>인감을 분실한 경우 조합장 및 조합 업무 담당자는 즉시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인감 분실 및 신규 인감 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첨부 : 인감 신고서</p>
<p>7. 회사의 인감 분실</p>	<p>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당사와의 거래용으로 신고한 사용인감을 분실한 경우 조합장 및 조합 업무 담당자는 즉시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인감 분실 및 신규 인감 신고를 하여야 함</p>
	<p>◆ 제신고 및 신청서</p> <p>- 첨부 : 인감 신고서</p>
<p>8. 액면 분할·병합 및 자본 감소</p>	<p>회사가 주식의 액면 분할·병합을 하거나 자본 감소로 주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예탁된 주권을 교체하여야 함</p>
	<p>◆ 예탁주식 변경 신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을 교체하는 경우 예탁주식의 수가 변동되므로, 이에 따른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주식내역을 해당 예탁일별 예탁차수별로 구분하여 신규 예탁과 같이 예탁주식 내역서를 작성하고,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예탁주식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li> <li>▶ 조합은 비예탁주식을 제외한 수량의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구주권과 교체하여야 하며, 계좌대체 예탁제도 이용 조합은 비예탁주식을 계좌대체를 통해 반환 받음</li> </ul>

제6장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환매수 절차

1. 환매수

비상장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는 것을 말함

- ▶ 환매수가 가능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된 자사주로서 예탁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인출이 가능한 주식임

2. 환매수에 관한 협의

조합 대표자는 자사주의 환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약정으로 체결함

- ▶ 우리사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약정으로 체결
- ▶ 환매수 처리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조합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음
- ▶ 조합은 환매수에 관한 협의 사항 및 이사회가 정한 세부 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함

▷ 환매수 협의 사항 ◁

- ① 회사의 환매수 여부
- ② 환매수 방법 및 시기 (사안 발생시, 매주, 매월, 매분기 등)
- ③ 환매수 가격 결정 방법 등
- ④ 환매수 총한도 및 조합원별 한도 등
- ⑤ 기타 환매수 절차에 관한 사항

3. 환매수 가격

환매수 가격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하나 다음의 평가가격을 참작할 수 있음

-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격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 ▶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격

<p>4. 주식매각 수 량 파악</p>	<p>조합은 회사와 합의한 환매수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회사의 환매수에 응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매각 희망 주식수를 파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조합원의 매각 희망 주식의 환매수에 적격한지를 확인함</li> <li>▶ 조합은 조합원별 매각 희망 수량이 회사의 환매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와의 약정 또는 이사회 의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조합원별 매각 가능 수량을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li> </ul>
<p>5. 환매수 계약</p>	<p>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환매수 신청서와 예탁 자사주의 인출 요청서를 받아 일괄하여 회사와 환매수 계약을 체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은 조합원이 인출 요청한 환매수 주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출(p149 참조)하여 회사에 교부하고, 매각 대금을 수령함</li> </ul>
<p>6. 환매수 주식 의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 대금이 조합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인출한 주식이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 p181이하 참조)</li> <li>▶ 환매수를 위한 인출 주식이 조합원의 출연 기금으로 취득된 경우로서 당해 출연 기금이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li> <li>▶ 인출 주식이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인출 주식은 과세 대상임</li> <li>▶ 조합은 자사주 인출 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 주식에 관한 명세서를 발급 받아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 회사의 환매수에 의한 자사주 매도로 조합원에게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li> </ul>
<p>7. 환매수 대금 지급</p>	<p>조합은 매각 대금을 영수증 징구 후 조합원에게 지급함</p>

제7장 조합원 인출 주식의 우선 매입 절차

<p>1. 우선매입 제도</p>	<p>예탁 기간 경과 또는 중도 인출 사유로 조합원이 인출하는 자사주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규약의 정함에 따라 기타의 제3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함</p>
<p>2. 조합원의 우선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출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조합은 우선 매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우선 매입 신청을 받음</li> <li>▶ 우선 매입 대상은 인출 예정 주식이며, 우선 매입 가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장 주식 : 인출 전일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일의 매매기준가격)</li> <li>② 비상장 주식 : 적정 시가를 고려한 매매 당사자간 합의 가격</li> </ul> </li> <li>* 비상장 주식은 매매 당사자간 매매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은 인출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반환하여야 함</li> <li>▶ 조합은 우선 매입 희망 수량이 인출되는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우선 매입 권리를 배분함</li> <li>☞ 조합은 우선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 조합원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의 성립을 명확히 하여야 함</li> <li>▶ 우선 매입 조합원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인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함</li> <li>▶ 인출 주식의 과세 대상 여부를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li> <li>☞ 우선 매입 주식은 다시 의무 예탁해야 하므로 인출 서류와 예탁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인출과 예탁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함</li> <li>▶ 예탁 및 인출의 세부 절차는 4-5-1-1(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p139) 및 4-5-2(주식인출, p149)를 참고하기 바람</li> </ul>

2. 조합의 우선  
매입

- ☞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의 출연 또는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출하는 자사주를 조합이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 조합원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우선 매입한 자사주는 조합 규약 및 이사회회 정함 등에 의해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조합원 개인 별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함
  - ▶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금으로 우선 매입한 자사주는 조합 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함
  - ▶ 조합은 인출 서류와 예탁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인출과 예탁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 예탁 및 인출의 세부 절차는 4-5-1(주식 예탁, p136) 및 4-5-2(주식인출, p149)를 참고하기 바람
- ☞ 조합이 우선 매입한 경우 인출 조합원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의 성립을 명확히 하여야 함
  - ▶ 매수대금을 인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함
  - ▶ 인출 주식의 과세 대상 여부를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

## 제5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관리

### 제1장 조합기금의 조성

### 제2장 조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5편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관리

## 제1장 조합 기금의 조성

1. 조합 기금의 재원	<p>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과 그 수익금</li> <li>② 회사,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금품과 그 수익금</li> <li>③ 조합의 차입금</li> </ul>
2. 조합원 출연	<p>조합원은 반드시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므로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필요한 금전을 기금에 출연해야 함 (p10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기금에의 출자는 규약 및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도 강제될 수 없음</li> <li>▶ 조합원 출자기금은 출자 조합원의 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함</li> </ul>
3. 조합원 이외 의 자 출연	<p>회사 및 주주 등은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수 있음(p11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회사·주주 등의 금품 출연을 유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금 출연을 협의함</li> <li>▶ 조합은 금품 출연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약정으로 체결하고, 그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지함</li> <li>▶ 조합은 출연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환가하여 전산 또는 장부상으로 회계 처리함</li> </ul>

▷ 출연 협의 사항 ◁

① 출연 자산의 종류

: 출연 자산은 금전 이외에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있겠으나, 용이하게 자사주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금전 출연이 일반적임

② 출연 시기 및 출연 규모

③ 출연기금의 자사주 취득 시기 및 방법

④ 취득 자사주의 의무 보유기간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정함

⑤ 출연자의 조합원별 배분 요구 사항

▶ 출연자가 요구하는 배분 방법이 배분 원칙(p90 참조)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

⑥ 회수 주식의 처리 방법(p89 참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위의 사항이 이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를 것인지, 새로이 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함

4. 조합 차입 출연

☞ 조합은 회사의 상환 및 이자 지급 약속 하에 자사주 취득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 변제자력(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의 독자적인 차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조합은 회사 또는 주주 등과 협의하여 회사·주주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연을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회사·대주주와의 협의를 토대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약정하여야 함(p122 참조)

▶ 조합 차입(회사 또는 주주의 원리금 상환 조건)을 통한 자사주의 취득도 사실상 회사 또는 주주의 출연으로 보아야 함

\* 조합원이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책임진다면, 이는 비록 조합 명의로 차입일지라도 조합원 출자와 동일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합 차입과는 구별됨

▷ 회사 상환 약정 차입 주요 협의 사항 예시 ◁

- ① 차입금에 대한 회사(또는 대주주)의 원리금 상환 여부
- ② 차입 시 회사(또는 주주)의 담보 제공 및 연대 보증 여부
- ③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시기
  - ▶ 차입금 총 한도는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계연도 차입금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의 10%에 차입기간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상환 방법
- ⑤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자사주의 상환 배정 시 배분 방법
- ⑥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보유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영 §17 ②)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3. 출연 확인서 발급

조합은 출연자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 확인서(영수증)”등을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출연자에게 발급함

▶ 동 출연 확인서는 영수증의 성격과 추후 출연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활용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① 출연자의 인적 사항
- ② 출연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 ③ 출연 일자

## 제2장 조합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1. 조합 기금 관리

☞ 조합은 출연받은 기금을 자사주 취득 직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안전하게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조합 기금 이외의 자금과 별도로 예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 조합은 조성된 조합 기금을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금융기관에 조합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조합 명의(단체명이 부기된 조합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조합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조합 내부적인 지분관계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그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관리·처분하게 되고, 각 조합원은 그 예금에 대하여 지분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 못함

☞ 금융기관 거래 시 반드시 **조합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인지시켜야 함

▶ 조합 명의의 계좌로 개설하지 않고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동 금융 자산이 조합의 재산인지 조합장 개인의 재산인지의 구분이 어려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①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에 관한 과세 문제

② 조합장 개인의 채무에 기인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조합장 사망 시 동 금융 자산이 상속 재산으로 편입되어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 ▷ 금융기관 계좌 개설 방법 ◁

☞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함(금융실명법제3조제1항)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실지명**의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성명(홍길동)” 임(금융실명법시행령제3조제3호)

▶ 다만, 조합이 세법상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우리사주조합)과 고유번호”임

- ☞ 조합이 금융기관에 “조합장 성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홍길동과 조합 대표자인 홍길동을 구분  
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장 홍길동” 명의로 계  
좌를 개설하여 줌
  - ▶ 금융기관의 실지명의 확인 절차는 조합의 실체 확인과 조합  
장의 실명 확인에 의함(아래표 참조)
  - ▶ 조합장 변경 시 조합은 신임 조합장의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 의사록 사본)를  
제출하여 조합장을 변경하여야 함
- ☞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조합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줌
  - ▶ 금융기관의 실질명의 확인 절차는 고유번호증 원본에 의한  
조합 실체 확인과 조합장의 실명 확인임(아래 표 참조)
- ☞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아래 표 참조)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명의인	신청인	계좌 개설(실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조 합 장 (단체명 부기)	조합장	① 조합장의 실명확인증표 ② 임의단체 확인 서류 - 조합 규약 사본 - 조합장 선임에 관한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의사록 사본 - 조합원 명단
	대리인	① 조합장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임의단체 확인 서류(위 참조) ④ 조합장의 위임장(조합장 개인 인감증명 서 첨부)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조합장	①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②조합장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①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②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조합장의 위임장(조합장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④조합장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2. 조합 기금의  
예탁



☞ 조합은 금융기관과 금융 상품, 자사주 취득 시기에 따른 예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을 예탁하여야 함

- ▶ 조합 기금은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의 예탁은 동 목적에 사용되기 전 일시적인 보관이므로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 또한, 안정적인 보관이어야 하므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경우, 자사주 취득을 위한 경우 및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보관하여야 함

3. 회계 관리

☞ 조합은 기업 일반회계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기금의 증감을 그 발생 순서에 따라 증감의 사유별로 회계장부(전산파일)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조합은 기금을 출연 재원별(그 수익금을 포함)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그 기금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 방법(즉시 배정·상환 배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 조합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조합 기금을 결산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의 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조합 기금의  
사용

- ☞ 조합 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그 기금이 출연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함
  - ▶ 즉, 조합의 회계 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출연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출연일부터 다음회계 연도 6월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함
- ☞ 조합은 조합원이 출연하지 않은 조합 기금으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을 인수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에 따라 우선 배정되는 신주인수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또는 부여된 것이므로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 ▶ 따라서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전(회사·주주 출연금 및 회사·주주 상환약정의 차입금)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제6편 한국증권금융의 대출 제도



## 제1장 대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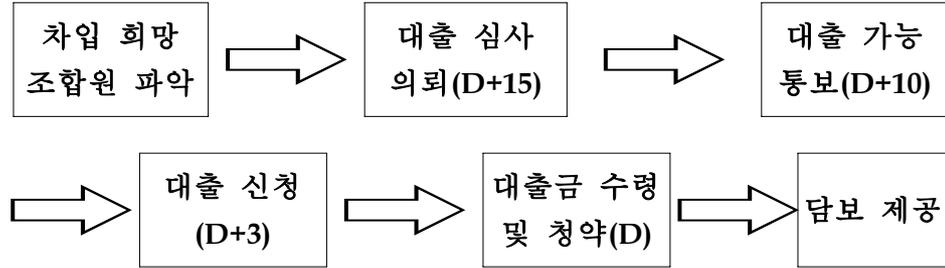
1. 대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b> :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 조합 또는 법인에게 대출</li> <li>☞ <b>우리사주담보대출</b> :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하고 있는 자사주를 담보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li> <li>☞ <b>우리사주환매수자금대출</b> :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법인에게 대출</li> </ul>
2.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b> : 조합원 1인당 5,000만원 이내</li> <li>☞ <b>우리사주담보대출</b> : 조합원 1인당 5,000만원 이내</li> <li>☞ <b>우리사주환매수자금대출</b> : 우리사주 취득자금 이내</li> </ul>
3. 대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b> : 5년 이내 (조합 및 법인의 경우 7년 이내)</li> <li>☞ <b>우리사주담보대출</b> : 1년 이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li> <li>☞ <b>우리사주환매수자금대출</b> : 5년 이내</li> </ul>
4. 대출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중 선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변동금리</b> : 기준금리(CD 91일물, 통안증권 1년물, 2년물, 국고채권 3년물 유통수익률 중 선택)에 연동하여 금리 변동</li> <li>* <b>고정금리</b> : 기준금리(통안증권 1년물 및 2년물, 국고채권 3년물 유통수익률 중 선택) 고정</li> </ul> </li> <li>☞ <b>약정기간중 중도상환수수료 없음</b></li> </ul>
5. 담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b> : 조합원 또는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담보비율</b> : 전일종가, 취득가 또는 발행가 기준으로 100%이상</li> </ul> </li> </ul>

6. 상환 방법

- ☞ **우리스주담보대출**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 중 잔여 예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사주
  - ▶ **담보 비율** : 상장종목은 전일종가의 70%를 기준으로 110%이상  
비상장종목의 액면가의 60%
- ☞ **우리스주환매수자금대출** : 소속법인이 환매수한 자사주
- ☞ **원금 상환**
  - ① **만기 일시상환** : 약정한 대출기간의 만기에 대출금 전액 상환
  - ② **월단위 균등 분할 상환(거치 기간 설정 가능)**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대출금을 남은 차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균등액으로 나누어 상환
- ☞ **이자** : 1개월 단위로 납입(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입)
  - \* 지정은행계좌 출금이체 이자 납입 가능
- ☞ **매도상환** :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
  - \* 인터넷뱅킹 또는 조합이 직접 방문하여 매도 및 상환 신청

제2장 조합원의 유상증자시 취득자금 대출

1. 차입 절차 개관  
 조합원의 유상증자 참여시 필요로 하는 취득자금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조합이 대리인으로서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유상증자 취득자금(청약·납입대금 : 이하 “청약대금”이라 함)에 충당하고, 동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함



2. 차입 희망 조합원 파악  
 조합은 유상증자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원이 취득함에 있어 청약대금의 차입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는지의 여부와 차입 신청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

▶ 대출가능금액은 조합원의 청약 주식수에 발행예정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조합원별로 5,000만원이 한도임

예) 6,000만원 취득시 : 조합원 대출가능 금액은 5,000만원 이내

▶ 금융신용거래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되므로 이점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대출 적격 여부 심사 의뢰  
 한국증권금융은 법인의 신용 상대 등을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은 미리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심사를 의뢰함(대출 심사 기간 : 통상3~4일)

▶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심사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업을 방문하여 실지조사 후 대출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통보함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차입 기간, 대출금리, 상환 방법, 회사의 연대 보증 여부 등 차입에 관한 제반 조건을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함

▶ 차입 기간은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음

- ▶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과 차입기간 범위내의 월단위 분할 상환 및 거치식 분할 상환이 가능함
  -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 전액을 차입기간 만료시에 상환
  - \* 월단위 분할 상환 : 대출금을 차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균등액으로 나누어 상환
  - \* 거치식 분할 상환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대출금을 남은 차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균등액으로 나누어 상환
- ▶ 이자는 월단위로 후취하여 납입하며,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함

4. 대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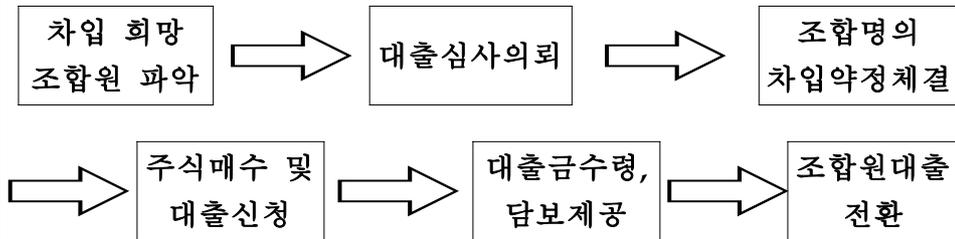
조합은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한 차입에 관한 제반 조건을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차입금액 및 동 차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조합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한국증권금융에 차입을 신청함

제3장 시장매입시 취득자금 대출

1. 차입 절차 개관

☞ 조합원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자금을 조합원의 차입신청에 따라 조합이 한국증권금융과 차입약정을 하고, 약정기간동안 조합은 직접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동 매수자금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조합명의 차입을 신청하여 결제함

▶ 조합은 동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조합명의 차입을 조합원 개인별 차입으로 전환함



2. 차입 희망 조합원 파악

조합은 조합원에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수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차입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는지의 여부와 차입 신청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

▶ 대출신청 예상금액은 조합원의 청약 주식수에 평균 매수예정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로서 조합원별로 5,000만원이 한도임

▶ 금융신용거래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되므로 이점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하여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대출 적격 여부 심사 의뢰

☞ 한국증권금융은 법인의 신용 상태 등을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은 미리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심사를 의뢰함(대출 심사 기간 : 통상3~4일)

▶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심사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업을 방문하여 실지조사 후 대출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통보함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차입 기간, 대출금리, 상환 방법 등 차입에 관한 제반 조건을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함

- ▶ 차입 기간은 조합의 매수약정기간 및 조합원 차입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 조합은 자사주를 매수할 증권회사를 지정하여 매수방법, 기간, 매수주식의 한국증권금융에 담보제공 등을 협의함
  - ▶ 조합은 증권회사 및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매수자금 결제방법 및 취득한 주식의 담보제공에 관련하여 협의하여야 함
- 4. 조합명의 차입약정체결**
- ☞ 조합은 차입희망조합원의 대략적 규모이내에서 한국증권금융과 차입에 관한 조합명의 한도거래 차입약정을 체결함
  - ▶ 조합명의 차입약정기간은 조합과 한국증권금융이 협의하여 정하며, 대략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함
  - ☞ 또한 조합과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자사주 매입을 대행할 것을 약정한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입출고 및 현금 입출금”에 대하여 삼자 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 조합의 매수주문에 의거 한국증권금융은 매수결제대금을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송금하고, 증권회사는 동 매수주식을 한국증권금융의 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임
- 5. 주식매수 및 대출신청**
- ☞ 조합은 지정한 증권회사 위탁자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자사주 매수주문을 낼 수 있고, 매수주문이 체결된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보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결제대금에 대한 차입을 신청함
  - ▶ 조합은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도 금액 이내에서 수시로 차입을 신청할 수 있음
- 6. 대출금수령 및 담보제공**
- ☞ 한국증권금융은 조합의 대출신청에 의거 결제일(매수일+3영업일)에 동 매수주식의 결제대금(대출금)을 증권회사 은행(당좌)계좌로 직접 입금함
  - ▶ 조합은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이 해당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매입결제대금을 직접 송금함

7. 조합원 대출  
로 전환

- ☞ 증권회사는 약정에 의거 동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의 계좌(증권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입고함
- ☞ 조합의 주식매입이 완료되면 조합명의 차입금을 조합원별 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 ▶ 조합명의의 대출금은 상환하고 조합원 명의의 신규 대출이 발생하며, 대출제한 조건은 조합명의 대출과 동일함. 단, 대출기간은 조합명의 차입기간과 조합원명의 차입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어야 함
  - ▶ 조합원 명의의 차입신청시 서류는 통상의 조합원 차입신청에 준하여 차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조합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함



## 제7편  우리사주  관련  세제

제1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제2장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3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제4장  대주주등의  조합  출연금  소득  공제

제5장  증권거래세



## 제7편 우리사주 관련 세제(稅制)

### 제1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

**1. 시가와 취득  
가액의 차액  
비과세**

☞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속세및증여세법§46, 소득세법§20③)

\*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예시) 시가 1만원의 주식을 주당 5천원에 총1천주를 500만원으로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의 재산은 현금 500만원에서 주식 1천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은 그 차액(500만원)의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를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당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해 시가상당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②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시가상당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조합으로부터 배정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⑦, 령§82의4⑨)

\* 시가 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

▶ 위 예시와 동일한 조건이나 조합원이 **소속 법인**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88의4⑦, 령§82의4⑨)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출연금이 400만원이라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800주(400만원÷5,000원)에 대하여는 시가(800만원=800주×10,000원)와 취득가액(400만원=800주×5,000원)의 차액인 4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위①의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초과한 출연금(100만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주에 대하여는 시가상당액(140만원=200주×7,000원:시가의70%)과 취득가액(100만원=200주×5,000원)의 차액인 40만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사주를 조합으로부터 **배정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③만약, 위①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금액(0원)을 초과하는 당해 조합원의 출연금(500만원)으로 취득한 주식 전부(1,000주)에 대하여 시가상당액(700만원)과 취득가액(500만원)의 차액(200만원)이 배정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④그러나, 위 주식 1,000주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면 **시가상당액**이 액면가와 시가의 70% 중 낮은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자사주(1,000주) 전체에 대하여 시가상당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2. 취득자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①)

☞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기금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즉, 조합원이 400만원을 출연하고, 출연 시점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위 400만원은 급여수령 등 소득 발생시점에 과세되었음)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이기 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의 이연**으로 보아야 함

▶ 즉, 교육·의료비 등의 소득공제와 같이 당해 소득공제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조합원이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하게 되므로 출연금액에 대한 **과세의 시기**가 현금출연 시점에서 취득 자사주의 인출시점으로 늦추어 진다는 것임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과세대상 자사주)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비과세대상 자사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2의4⑨)

▶ 과세대상 자사주는 추후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되어야 하므로 인출 시 과세되지 않을 비과세대상 자사주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내역 및 취득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고,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시 그 예탁주식이 **과세대상 자사주인지 비과세대상 자사주인지와 그 매입가액**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과세 종결 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기금 출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한국증권금융에 **소득공제 신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함(부록 서식 과세대상주식 변경 신청서 참조)

▶ 이는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소득공제금액의 과세가 종료되나, 조합기금 출연금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인출 시에 소득공제 금액에 과세가 되기 때문임

<조합원 甲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①의료비 2백만원과 ②조합기금 출연금 2백만원이 있는 경우>

예1) 甲의 과표가 2백만원인 경우 甲은 사유①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2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고 과세가 종료되도록 하여야 함

○ 甲이 사유②로 소득공제를 신청한다면 2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으나, 추후 인출시점에 과세되어짐

예2) 甲의 과표가 3백만원인 경우 甲은 사유①로 2백만원 사유②로 1백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3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고, 추후 인출시점에 1백만원에 해당하는 인출주식이 과세 되도록 하여야 함

○ “갑”이 사유②로 2백만원, 사유①로 1백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다면 3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으나, 추후 인출시점에 2백만원에 해당하는 인출주식이 과세되어짐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시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게 되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위 예1)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감소한 경우(위 예2)에는 그에 해당하는 주식이 과세대상주식에 해당되지 않음을 한국증권금융에 부록서식에 따라 수정 통보하여야 함

☞ 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의 출연금이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출되는 경우 인출일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⑥)

3. 회사 출연주  
식 등의 배  
정시 비과세

☞ 회사·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자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면 그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과표로 하여 과세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배정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이 배정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88의4③)

▶ 다만, 당해 회사의 출연에 의해 취득된 자사주로서 조합원 개인별계정 연간배정금액(배정주식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배정주식의 금액은 이연되지 않고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됨

\* 매입가액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2조의4조제1항제2호

\* 과세이연 한도 : 조합원별 직전 연도 총급여액(소득세법 §20②)의 20%(동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한도로 함)

▷ 한도초과분 과세표준(근로소득) 산정 ◁

①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자사주가 회사 출연금으로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인 경우

○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 한도 초과 주식수

○ 다만, 실지 거래가액이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의 70%

\* 시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조제1항제1호

②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자사주가 회사가 취득하여 출연한 자사주인 경우

○ 자사주의 출연일 당시 시가의 70% × 한도 초과 주식수

▶ 회사를 제외한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한도가 없어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시점에 배정금액 전액이 과세이연됨

<회사 출연 주식 100주(출연 당시 시가 70% : 6만원)를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 연간 배정 금액 : 6백만원>

예1) 직전 연도 연봉이 2천만원인 조합원 "A"는 연봉의 20%(4백만원)보다 큰 금액인 5백만원이 과세이연 한도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 수가 83.3주(5백만원/6만원)이므로 이를 올림하여 84주는 배정시 비과세 되고 나머지 16주에 해당하는 금액(96만원 = 16주 × 6만원)은 배정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담당자는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

예2) 직전 연도 연봉이 4천만원인 조합원 "B"는 5백만원보다 큰 금액인 연봉의 20%(8백만원)가 과세이연 한도이므로 배정금액이 전액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점으로 이연됨

☞ 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시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으로 과세시기를 이연한 자사주(과세대상 자사주)와 과세이연 한도 초과로 배정시점에서 과세된 자사주(비과세대상 자사주)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세대상 자사주는 추후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되어야 하므로 인출 시 과세되지 않을 비과세대상 자사주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

▶ 조합은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시 그 예탁주식이 과세대상 자사주인지 비과세대상 자사주인지와 그 매입가액 등을 통지하여야 함

#### 4. 인정이자 비과세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자상당액\*)이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서 배제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규칙 §44 제3호)

\* 이자상당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리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차입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과의 차액

▶ 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통상의 정상적인 대부와 비교하여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중 실제금리(국세청장 고시)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은 대부받은 근로자에게 상여로 지급(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함)된 것으로 간주함(법인세법 §52관련 실무)

5. 배당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자사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88의4 ⑧)

- ① 배당지급 기준일(결산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을 것
- ② 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일 것
- ③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2007년 부터는 1천8백만원)이하일 것

▶ 다만,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 배당소득세를 인출일에 회사가 추정하여야 함

예) 12월 말 결산인 A社의 소액주주인 조합원 “갑”은 2004. 12. 31. 액면기준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을 통해 취득, 같은 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함

- 배당금지급 기준일(결산일) 및 지급일 : 2004년 12월 31일 및 2005년 3월 10일
- 배당금 지급률 : 액면기준 10%
-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129) : 14%

▷ 조합원 “갑”은 배당금 수령일(2005년 3월 10일)에 배당소득 비과세 조건인 배당금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으며, 보유 주식이 1,000만원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 100만원(1,000만원 × 10%)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그러나, 조합원 “갑”이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12.31. 이전, 즉 2005. 12. 1.에 정년퇴직을 사유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한다면, 인출일인 2005. 12. 1.에 2005.3.10. 지급된 비과세 배당소득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조합은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 담당자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88의4 ⑧)

☞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조합원은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특히, 의무예탁기간 만료를 사유로 조합원의 인출요청 없이 조합이 임의적으로 일괄 인출하여 별도 보관하는 경우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명의로 일괄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보관하고,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주로서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91)

**6. 장기보유 주식 인출금액 비과세**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에서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비과세 인출주식”이라 함)을 차감한 인출주식(이하 “과세 인출주식”이라 함)은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

▶ 과세 인출주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당해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의 50%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⑤)

-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② 회사 출연 분으로서 배정 시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된 주식
- ③ 무상증자주식

▶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당해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추후 인출한 연도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88의4 ④)

\* 보유기간 :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일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주식이 아닌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봄

예) ① 2001년 5월 : 100주(과세대상주식) ② 2002년 5월 200주(100주는 과세이연한도 초과로 조합원 개인별계정 배정 시 과세된 자사주임)를 각각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하고, 2004년 6월에 200주를 인출함

▷ 이 경우 인출주식 200주 중 100주(①예탁 주식)는 3년 이상 보유한 과세대상 주식이고, 이에 따라 50%(50주) 비과세 50%(50주)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 나머지 100주(②예탁 주식)는 배정 시 과세된 주식이 먼저 인출된 것이므로 인출시점에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과세 대상주식이 늦게 인출되므로 과세이연이 지속될 수 있음

☞ 조합은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이 발급하여 주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담당자는 조합이 제출한 주권인출내역서를 참고하여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인출주식의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구한 후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세인출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

$$\text{과세인출주식의 과표} = \text{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times \text{과세인출주식 수}$$

7. 양도소득 비  
과세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한 후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자사주의 액면가액이 1천8백만원 미만이고 그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88의4 ⑬)

**제2장 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p><b>1. 조합에 대한 출연 손비 인정</b></p>	<p>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됨(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p>
<p><b>2. 성과급으로 자사주 지급시 손비 인정</b></p>	<p>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재산가액인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으나,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법인세법시행령 §20 제2호)</p> <p style="margin-left: 20px;">▶ 이 경우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조합이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손비로 인정함</p>
<p><b>3. 조합운영비 손비 인정</b></p>	<p>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령 §45)</p>
<p><b>4. 대여금 인정 이자 익금 불산입</b></p>	<p>법인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효율에 의한 자금운영에 비해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이를 부인(否認)하지 않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규칙 §44 제3호)</p>

**제3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88의4 ②)
  - ▶ 조합은 자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분하는 수단인 성격을 지니므로 운용단계에서 조합에 귀속되는 수익은 소득세를 비과세함
  - ▶ 조합은 비과세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추후 조합원이 인출하는 때에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 ☞ 우리사주조합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상속세및증여세법§12제5호, §46 제4호)

**제4장 대주주 등의 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조합원 이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 ☞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부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30%를 한도로 함)하거나,
  -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30%를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⑫)

**제5장 증권거래세**

<b>1. 과세 대상</b>	<p>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있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p> <p style="margin-left: 20px;">*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증권거래세법§2③)</p>
<b>2. 납세의무자</b>	<p>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구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li> <li>② 증권회사 창구를 통한 장외 매매의 경우 : 증권회사</li> <li>③ 개인간 장외 매매의 경우 : 양도자</li> </ul>
<b>3. 비과세 대상</b>	<p>다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증권거래세법§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li> <li>②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li> <li>③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등</li> </ul> <p>▶ 세액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필요 사유별로 별도 규정함</p>
<b>4. 과세 표준</b>	<p>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회사의 중개로 양도되는 비상장 주권 : 양도가액</li> <li>② 위 ① 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li> </ul>

- ③ 위 ①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 i) 상장법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ii)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iii)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장외거래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향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iv) i 내지 iii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5. 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0.5%이나, 자본시장육성을 위하여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현행세율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기 바람

6. 신고와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제8편 질의 응답(Q&A)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2장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제3장 우리사주조합 기금

제4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제5장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제6장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제7장 의결권등 권리 처리

제8장 기타 사항



## 제8편 질의 응답(Q&A)

###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 Q1-1. 모든 법인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자사주")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여야 합니다.
- 한편,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그 밖의 법인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 Q1-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와 회사 중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조합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 Q1-3.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설립해야 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Q1-7 참조)이 있는 근로자 전체의 1/5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 다음, 우리사주조합 규약(안)을 작성합니다.

3.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4. 설립준비위원회는 3의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업무는 종결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우리사주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Q1-4.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반드시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까?**

---

☞ 그렇습니다.

- 설립준비위원회와 한국증권금융과의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 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의 성격은 민법상 임차와 위임의 혼합계약으로서 향후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보관 및 인출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와 그에 따른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부차적으로는 조합 설립 업무의 적정성과 조합 규약의 적합성에 관하여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Q1-5.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효력과 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 우리사주조합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법령상의 강행 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약에 위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Q1-6.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야 합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규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1-7.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

☞ 그렇습니다.

-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관계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 포함)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기업의 주주 및 관계회사 주주인 관계회사의 근로자(단, 소액 주주는 조합원 자격이 있음)
3.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4조의5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 주주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 소액 주주란 당해 기업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 일용 근로자란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중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Q1-8. 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지배회사와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모두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제8편 질의 응답(Q&A)

- 원칙적으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 모두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예탁중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관계회사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Q1-9. 근로자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

- ☞ 근로자는 서면(조합가입신청서)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조합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며, 이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

**Q1-10. 우리사주조합은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Q1-11.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 ☞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 간주되며, 동 법이 시행된 후 6월(2002. 6. 30) 이내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조합 운영 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 Q2-1.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

- ☞ 조합원총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①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⑤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가 우리사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는 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 대의원회는 회사의 조직이 대규모이거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조합 운영 및 조합원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한 간이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와 병존합니다.

---

### Q2-2. 조합원총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

- ☞ 조합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약상의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의 공고로 정기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기타 규약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 3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

### Q2-3.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

-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당연히 이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 ☞ 대의원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점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 방식과 동일하나 조합원총회가 아닌 사업장, 부서, 직급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 Q2-4.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각2인 이상 10인 이하)으로 구성되는 임의적인 기구입니다.
  - 즉, 동 위원회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상호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 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는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 Q2-5. 조합의 재산 및 회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 ☞ 조합은 조합의 재산(자사주 및 조합 기금)을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취득한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조합계정 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하여 예탁·보관하고 조합 기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란 조합원별로 소유권이 일정 조건하에 인정된 재산을 관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조합계정은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배정)되기 전의 조합 공동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 ☞ 조합은 회계 장부 및 주식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그 부속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 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3장 우리사주조합 기금

---

### Q3-1. 조합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및 그 수익금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조합 명의)차입금
  4. 조합계정의 보유 자사주의 배당금 등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 우리사주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출연 주체별로 조합원 출연분과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분으로 구분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

### Q3-2. 조합 기금은 특정된 사용 기한이 있습니까?

---

- ☞ 그렇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된 조합 기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는 자사주 취득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사유 해소 시까지 금전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2. 당해 회사가 상장 폐지 또는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서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Q3-3. 조합 차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회사·주주 또는 조합원의 상환 및 이자 지급 약정 하에 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금전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말하나, 조합원이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조합 차입은 차입에 따른 법률 효과가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어 조합원이 차입하여 출자하는 것과 동일하여 제도 관리상 조합원 출자와 구별에 실익이 없는 바, 조합 차입이란 사실상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조합 명의 차입을 말합니다.

조합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차입금 상환을 위한 회사·주주의 출연 시점까지 조합계정에 의무 예탁하고, 차입금의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상환시에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1년간 의무 예탁하여야 합니다.

## 제4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 Q4-1.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무상으로 출연받는 방법
2. 회사·주주·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출연받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3.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방법
4. 조합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 부수한 권리(유·무상증자, 배당등)의 행사로 취득

---

**Q4-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

- ☞ 상법(제418조)은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신주인수권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습니다.
- 이러한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법상의 주주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일정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우선 배정”이라 합니다.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에정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법인이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에 당해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증권거래법 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발행 또는 매출되는 주식의 일정부분을 인수·매입하는 경우가 아닌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은 통상 제3자 배정이라 말합니다.

---

**Q4-3. 우리사주조합원은 우선 배정 주식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취득합니까?**


---

- ☞ 조합은 회사로부터 우선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을 조합 규약으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다음 일정 기일까지 조합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배분받은 조합원은 주식의 청약 여부와 청약 수량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기간에 조합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합니다.
  3. 조합은 조합원별 청약을 마감·합산하여 조합 명의로 주간사 청약처 또는 회사가 지정한 주금 납입 은행에 청약증거금을 주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청약이 완료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주금 납입일 익일부터 주주가 됩니다.

4. 조합은 주금 납입일로부터 약 1개월을 전후하여 회사로부터 주권의 실물을 교부 받아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함으로써 주식의 취득 절차가 완료됩니다.

---

**Q4-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은 무엇이며, 제공기간 중 다수의 행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

- ☞ 제공기간이란 회사로부터 일정 가격에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존속기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서 권리의 대기기간과 행사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공기간의 경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 6월 이상 2년 이내의 제공기간 중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다수의 행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번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로 근로자에게 여러번의 주식 매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목적인 다수 매입에 의한 가격 분산의 효과를 높여 주가변동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부여시점과 행사시점의 기간 간격이 커지면 시가와 행사가격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Q4-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

---

- ☞ 그렇지 않습니다.
- 차액 보상이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의 자사주 취득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므로 차액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여 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량 전체를 주식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Q4-6.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여야 합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우선 배정의 경우 : 신주권 교부일
  2. 기업·대주주 등의 주권 양도(주식출연 포함)의 경우 : 주권 양수일
  3. 주식시장에서 매입한 경우 :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의무 예탁 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예탁하도록 하며, 예탁이 늦어질 수록 조합원의 인출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우선 배정과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주권을 신속히 발행·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상법 제355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당해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5장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

### 5-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언제 조합원에게 배정되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재원과 취득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정 시기가 다르며 그 배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주주의 무상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2. 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조합 차입으로 구성된 조합 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이 상환되는 시점에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

**Q5-2.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조합원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조합은 자사주 또는 자사주의 취득 권리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에 있어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규약으로 정하여 놓거나, 혹은 조합 이사회에서 배분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면 될 것입니다.

## 제6장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

**Q6-1.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할 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1개월 이내에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로서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 자사주(원주)의 잔여 예탁기간이 무상증자 신주교부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무상증자 신주
  2.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유상증자 신주
  3.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자사주

---

**Q6-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 예탁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무 예탁 기간은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주식이 예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 경우 “의무예탁기간 1년”에 의한 인출일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초일은 불

산입하게 되므로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예탁 응당일의 다음날”이 인출일이 됩니다. 즉, 2006. 1. 1.에 예탁된 주식은 2007. 1. 1일까지는 예탁되어야 하고 2003. 1. 2.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Q6-3.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한 주식을 재예탁할 수 있습니까?**

---

☞ 재예탁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주식은 더 이상 법령상의 우리사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리사주로서의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 따라서, 의무 예탁 기간이 경과하여 예탁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인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제상으로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유(배당소득세 면제-1년, 과세일출 주식 일부 비과세-3년)된 주식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Q6-4. 우리사주조합은 주식을 어떤 형태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합니까?**

---

-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회사로부터 주권(상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실물로 교부받아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주권의 종류는 조합원별 소유량 및 조합원 퇴직에 따른 중도 인출 등을 감안하여 주권의 종류별(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등)로 적절히 발행하여 예탁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조합은 계좌대체 예탁제도를 이용하면 실물 주권의 발행·이동 없이 계좌대체를 통해 예탁하고 계좌대체를 통해 예탁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Q6-5.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습니까?**

---

제8편 질의 응답(Q&A)

☞ 조합원은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합을 통하여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자사주를 인출 할 수 있으며, 조합계정의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출 할 수 있습니다.

① 조합의 해산 또는 의무예탁기간의 만료

②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의 퇴직,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자사주는 제외)

③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7급 이상의 장애 발생,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 이상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을 임의적으로 탈퇴하거나 퇴직이 아닌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의무 예탁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탁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Q6-6.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자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예탁하거나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 사유의 발생으로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출 요청을 받은 당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Q6-7. 조합계정에 예탁된 주식은 어떤 절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예탁 됩니까?**

---

☞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예탁된 자사주는 회사·주주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연시에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그 배정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계정간 이체(조합계정 → 조합원 개인별계정)를 신청합니다.

- 이 경우, 한국증권금융은 조합이 신청한 조합원별 배정 명세서에 따라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주식을 이체 처리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배정 및 예탁이 완료됩니다.

---

**Q6-8.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 사유에 해당됩니까?**

---

☞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이 단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은 예탁 주식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예탁 주식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제7장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Q7-1. 우리사주로 보유중인 주식의 (주주총회)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

☞ 우리사주로서 예탁중인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보유 주식인지 조합계정의 보유 주식인지에 따라 그 의결권 행사 방법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조합의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행사하거나,
2. 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거나,
3. 조합원의 의사 표시 또는 의결권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또는 위임요청)가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함(Shadow Voting)

-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 다음 방식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

제8편 질의 응답(Q&A)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으로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 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2.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또는 위임요청)가 없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Q7-2. 우리사주로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주식배당 포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주식배당 포함)은 수령 즉시 당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 회사·주주 상환 약정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주식배당 포함)은 수령 즉시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조합은 당해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하고 예탁 시점 이후 최초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배정시에 상환 배정 주식에 합산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

**Q7-3. 우리사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의 처리
  -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별로 청약 신청을 받아 일괄 청약한 후, 취득한 주식은 예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약 조합원에게 반환합니다.
  -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주식의 잔여 의무예탁기간동안 예탁합니다. 다만, 무상증자 신주 교부일 기준으로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조합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유·무상증자의 처리
  -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기금(조합원 출연금 제외)으로 청약한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예탁하거나 조합차입금으로 청약한 경우에는 조합계정에 예탁합니다.

다만, 조합 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 조합 기금으로 청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의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예탁합니다.

-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즉시 한국증권금융의 조합계정에 예탁하고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주식과 합산하여 추후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 제8장 기타 사항

---

### Q8-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자사주를 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을 해산하는 등의 임의적인 조합 해산은 불가능합니다.

1. 당해 기업이 파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해산한 경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 합병 등을 위하여 기업이 해산한 경우
4.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5.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산이 없는 조합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 해산에 관한 의견 조회를 하였음에도 1월 이내에 존속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 Q8-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당해 기업이 환매 수할 수 있습니까?

---

☞ 환매수할 수 있습니다.

- 상법은 자본 충실의 원칙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회사가 환매수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8-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의 출연 형태 및 출연 한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

☞ 제한이 없습니다.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할 수도 있고, 보유한 자사주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금전 등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전 등을 출연하는 데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회사의 출연액은 당해 연도 법인세 계산시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8-4. 인출 주식(퇴직사유 인출 포함)의 우선매입권이란 무엇입니까?**

---

☞ 인출하는 자사주는 조합 또는 남아 있는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그 매매 금액에 있어서는 상장주식은 인출일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격으로, 비상장 주식은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으나 만약 합의되지 아니하면 인출하는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출(점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 록

## I. 관련 법규

1. 근로자복지기본법(전문)
2. 증권거래법(발취) 및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3. 기타 관련 법령(민법, 세법 등 발취)
  - 가. 민 법
  - 나. 법인세법
  - 다. 소득세법
  -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 마. 조세특례제한법
  - 바. 증권거래세법(전문)

## II.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 유권 해석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 조합의 기금
4. 자사주의 배정
5.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등
6.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7. 조합의 해산 등
8. 우리사주 세제

### Ⅲ. 업무 서식

1. 행정서식(노동부 신고 및 보고 서식)
2. 조합 업무 관련 서식(한국증권금융(주))
  - 가. 우리사주조합표준 규약
  - 나.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및 조합설립 관련 제서식
  - 다. 주식예탁·반환 관련 서식 등 기타 제서식